

자유무역을 넘어 FTA 비판과 노동자 대안 모색

이해영, 임운택

한미 FTA 추가협상안이 공식 서명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국에서 국내 비준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또한 한-EU FTA도 양자간 서명을 완료하고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나아가 한중일 FTA도 연구되고 있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과 정부는 양자간 FTA를 무차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본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히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 무역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의 이식과 완성에 있다. 철저하게 초국적기업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협정이 설계되어 있다. 이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ISD) 조항이다. 즉, 민간 기업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대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공공·사회 정책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은 국가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진보적 민중·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한미 FTA를 비롯하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우리의 투쟁은 저지와 반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모델에 기초한 무역(협정)에 맞선 대안(전략)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자유무역을 넘어 : FTA 비판과 노동자 대안 모색”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통상·무역에 대한 대안 논의의 출발을 크게 두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안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인 지역주의에 대한 민주중도적 대안적 지역전략이 그것이다.

이해영 교수는 “자유무역을 넘어 : 대안무역의 형태와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몇 가지 대안적 모색과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설계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의미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8년 6월 4일 민주당 상원의원 셔로드 브라운(Brown), 하원의원 마이크 미쇼드(Mich명) 의원의 하원 53명, 상원 4명이 발의한 “무역개혁·책임·개발 및 고용에 관한 법안”(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무역협정이 필수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사유화와 탈규제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적용을 반대하며,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서도 엄밀한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조항들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협정의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유럽연합의 공격적인 신통상정책인 ‘글로벌 유럽전략’에 맞선 유럽 노동·사회운동 단체들의 대안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안적 통상 및 투자정책의 ‘목표’는 “적절한 식량, 물, 건강, 주거, 교육, 사회보장 등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을 충족시키고, 적절한 소득과 노동권을 포함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생태적으로 정당한 자원이용에 기초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보장하며, 협소하게 유럽 GDP의 증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웰빙의 수준을 고양시키는 것” 등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상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포함하여 글로벌 유럽 전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남미에서 실험중인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을 언급하면서, “통상이 자본논리에 기초한 이윤극대화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대중의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주의’ 전략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문화다양성협약’을 소개하고 있다. 즉, FTA에서 문화를 예외로 하라는 요구는 문화를 넘어 식량, 교육·보건의료 등 필수서비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외주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전략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해영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에 기초한 자유무역협정(FTA)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대안적인 통상 및 무역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 대안은 미국의 ‘무역개혁·책임·개발 및 고용에 관한 법안’과 같은 대안적인 협정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과 같은 대안적 지역주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문화다양성협약’에서 보듯이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를 관철시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영 교수는 대안의 구성을 위한 대원칙을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성’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지렛대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공정성’은 통상협정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확보되어야 할 원칙이며, ‘다양성’은 문화를 포함하여 경제, 생활, 욕구의 다양성

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에서 기존 자원의 최대 고갈을 지향하는 생산방식과 노동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보고서인 임운택 교수의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민주주의적 거버넌스의 전망”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은 국민국가의 틀 안에 제한된 정치의 공간을 뛰어 넘어 시장이 정치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진보시민사회운동도 새로운 대안운동을 발전시켜야 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거버넌스(지배구조)는 일국을 넘어 국외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운택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역내 협력 움직임(아세안+3)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세안(ASEAN)이나 아펙(APEC) 등 지역 경제체제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현실이 아세안을 넘어선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아세안+3’은 1997년에 출범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참여하는 구조이다. ‘아세안+3’은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며,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설립,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 동아시아투자자금(AMF) 등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에서, 본 보고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금융협력’

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금융협력’이 강조되는 역사적 배경에는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국가 간 이해 및 각 국가 간 계급적 이해를 초월하여 제2의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위기발생시 동아시아의 대처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로는 양자간 통화 스왑협정의 체결이다. “양자간 통화 스왑 협정은 동아시아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협정에서 약정한 금액을 위기에 처한 국가의 화폐와 교환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는 장치”이다. 이는 1997년 위기 직후 추진된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이 좌절되면서 차선책으로 추진된 것인데, 2000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임운택 교수는 양자간 스왑협정으로 역내 금융협력이 한 단계 발전되었으나, 실제 금융위기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위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서 역내 통화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역통합을 구체화하려는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통화지역주의는 “자본(특히 금융자본)이 시장에서 자립성을 획득하는 반면에, 개별 국가의 재정 정책 및 통화정책적 주권은 약화되며, 이는 개별국가의 노동자 및 기층세력에게는 현저한 사회정책적 후퇴를 예고”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통화기금의 설립은 EU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듯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서막”으로 진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북미와 유럽에서 진행된 경제통합의 경험을 보건대, 사회통합이나 정치통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자본세력을 위한 경제/시장통합에만 머물렀으며 그 대가도 엄청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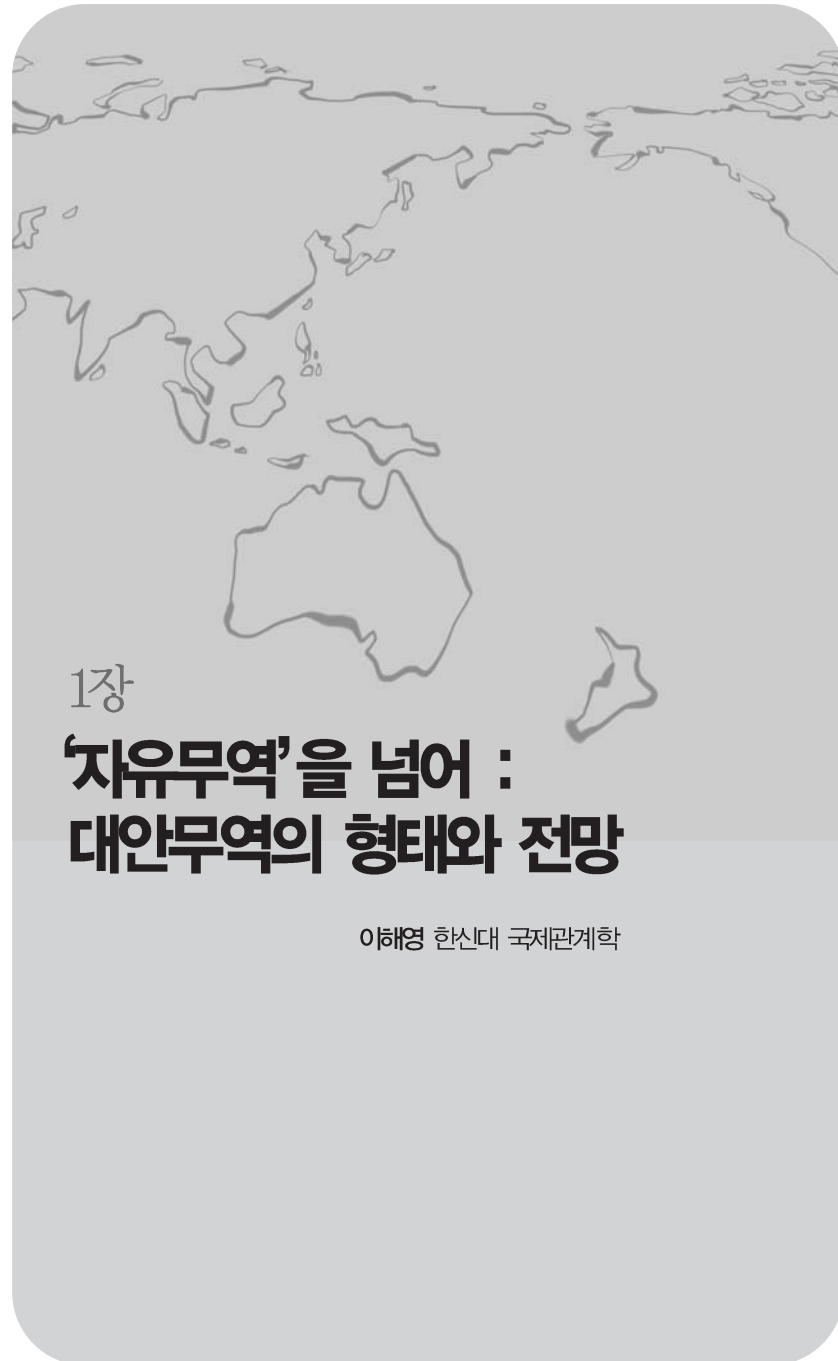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 보고서는 대안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원칙으로 “

▽공정, 평화, 정의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 ▽의사결정에 민중의 참여와 역량강화 ▽책임감과 투명성 ▽기층 민중의 기본적 욕구 실현 ▽생산자원에 대한 민중의 통제와 권리 ▽사회영역에서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대안적 지역주의를 위한 노동운동의 대응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주도적 지역주의에 대한 개입 전략이다. 즉, 지역 거버넌스(지배구조)에서 지역기구나 정부들에게 민주적 참여공간을 받아들이고 이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기존의 국가주도 지역주의 모델에 근거하여 대안적 발전가능성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국가라는 변수를 배제하고 지역주의에 대해 ‘순수하게’ 대안적인 접근”을 찾는 방식이다. 다국적기업이 유리한 생산 조건을 찾아 산업기지를 이전하는 전략을 방어하기 위해 역내의 특정 산업부문 노동조합들이 연대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임운택 교수의 보고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모습인 지역주의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것이 국가주도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 개입전략이든 비국가행위자들간의 대안적 지역협력 모델이든, 노동조합은 ‘금융’과 ‘통상’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다.

이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자유무역을 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대안적인 무역과 통상 정책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장

‘자유무역’을 넘어 : 대안무역의 형태와 전망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I 문제의 소재_자유무역, 보호무역, 공정무역

1.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최근의 G20 정상회담을 보노라면 보호무역은 어느덧 만인이 반대하는 가히 범죄에 가까운 무엇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이명박대통령은 말할 것 없고, 영국의 수상 그리고 브라질의 룰라까지 모두가 한목소리다. ‘보호무역주의’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반대한다. 지구촌이 이렇게 같은 생각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일순 행복감에 젖기도 한다.

아니나 다를까, 한 꺼풀만 벗기면 예의 그 본모습이 드러난다. 최근 보기 드문 말의 성찬을 이루었던 G20회담만 해도 그렇다. 서로를 경제위기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고 또 얼마나 같지 아무도 모른다. 자유무역과 ‘천하에 몫쓸 놈’ 취급을 당하는 보호무역사이만 해도 그렇다. 이 문제를 다루어 본 진지한 연구자라면 그 누구도 둘 사이에 서열을 매기거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다만 그때 그 때 누가 센가에 따라 그 저 모른 척 따라 갈 뿐이라는 것도 말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 한국이 자유무역덕에 성장했든가. 한국경제의 놀라운 고속성장이 수출에 기대어 가능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시의 대외경제 정책이 자유무역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철저한 보호주의아래 단지 자유무역에 기생하고 이를 이용해 먹었을 뿐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연하는 것도 참 낯 뜨거운 노릇이다.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J. 바그와티 교수는 자유무역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

러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작년 <통상시스템의 흰개미떼>라는 책을 낸 바 있다.¹⁾ 여기서 자유무역과 세계화 열혈 지지자인 그는 FTA 곧 '자유무역' 협정을 국제 자유무역을 값아 먹는 '흰개미떼'라고 힐난한다. 심지어 이를 국제통상시스템의 '매독'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아니 자유무역협정이 자유무역의 '매독'이라는 말이다. 그에 따르면 '자유무역'이라는 말만 참칭하는 것이지, 모든 '자유무역' 협정은 그 가입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은 가입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해악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그와티 교수가 들이대는 또 다른 근거 역시 만만치 않다. 지적재산권보호, 노동 및 환경 조항과 같은 '무역과 무관한' 조항들이 '무역관련(trade-related)'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WTO는 물론이고 최근의 모든 FTA에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적권이란 것이 사실 자유무역과는 무관한 로열티 수급에 불과하고 노동, 환경조항이 상대국의 수출단가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변형된 '수출 보호주의'라는 그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유럽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만성적 지적권 적자국가인 우리가 FTA에 이 조항을 넣고도 '제도선진화'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주의라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무식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 <르몽드>지 자매지인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대표적인 유럽의 진보적인 월간지다. 이 월간지가 마음먹고 2009년 3월호를 보호무역주의 특집으로 꾸몄다. 4월의 G20를 겨냥한 것이었다. 프레데릭 로르동은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비왜곡경쟁(non-distorted competition)' 곧 부정직한 경쟁침해가 전혀 없

는 '공정경쟁'의 허구를 비판한다. 보호주의가 말처럼 위협적이라면 우리가 '비보호무역주의' 환경 곧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에 있어야 하고 이는 경쟁 참여 행위자들이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하지만 그런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애초부터 불평등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구조적 보호 체계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시장의 형식적인 조건만 창조하려 드는 자유무역주의의 허구"다.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국가., 사회보장 비용도 환경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국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노동권이 임금에 압력을 행사하는 나라들" 이모든 것은 실은 보호무역이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그 자체로 보호무역주의적이다."

로르동은 "동질화된 하나의 세상에 대한 환상을 깨고 우리는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자유시장'과 대립시키기를 고집하는 공허한 논쟁에서 빠져 나와, 사안 자체가 보호무역주의적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상이한 수준과 형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그에게 WTO가 하는 일은 "특정한 왜곡 상태, 즉 '공평한 경쟁의 장'의 외피를 쓴 구조적 왜곡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일이 아니"일 뿐이다.²⁾

자크 사피르 역시 이렇게 주장한다. 어차피 보호무역주의는 이제부터 대세다. 그러므로 유럽연합 공동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이를 사회적 약자나 생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말이다. 그리고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에서 유래된 유럽노동자들의 임금디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호가 불가피

1) J. Bhagwati (2008),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are Undermining Free Trade, (Oxford Uni. Press, New York/Oxford)

2) 프레데릭 로르동, "보호무역주의의 위협론"은 완전한 허구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3월호

하고 또 그래야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적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에게는 “보호무역주의만이 오늘날 유럽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사회보장제도와 조세구조의 악화를 멈출 수 있다.”

“이 점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기득권을 보조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임금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렀으면서도 그에 걸맞는 사회 정책이나 환경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국제무역이 전 세계를 빈곤에 몰아 넣은 결과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것이다.”³⁾

결국 그렇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아마 최선의 방도는 자유무역 엄숙주의라기보다, 그 불가피성을 승인하는 지혜라 하겠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보호무역은 피할 수 없다.⁴⁾ 그 이름이 무언가는 중요치 않다.

3) 자크 사피르, “위기의 자본주의: 보호무역주의에 길을 묻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3월호.
4) “The question of the desirability of Free Trade has gone through a Revolution in the Postwar Theory of Commercial Policy. In the face of market failure (what I called “distortions”), economists over nearly 200 years since Adam Smith had thrown up their hands and said that we could not rank-order free trade and protection.” J. Bhagwati, Stockholm School Special Lecture on my Forthcoming Book: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are Undermining Free Trade, 10 April 2008.
5) 이하 논의는 세계공정무역기구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공정무역 라벨링 기구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A Charter of fair trade principles (2009) 를 참조.

2.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⁵⁾

1) 공정무역의 정의

세계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더 많은 공정성을 모색하는 대화, 투명성 그리고 존중에 기반한 교역파트너십이다. 그것은 특히 남반구의 주변화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교역조건과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소비자의 지지를 받는 공정무역기구는 통상적인 국제무역의 규칙과 관행에 있어 생산자를 지원하고, 자각을 제고하며 통상적인 국제무역의 규칙과 관행상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핵심원칙

나아가 그 공정무역의 핵심원칙으로는 다음이 있다.

- 주변화된 생산자를 위한 시장접근의 확보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관계
- 시장조건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생산자의 자생력 형성 및 강화를 지원
- 소비자의식 향상과 지원
- ‘사회계약’으로서의 공정무역, 곧 일반 시장과는 달리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생산자는 공정무역을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 공정무역은 자선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이 된다.

그런데 공정무역을 연구해 온 개빈 프리델(Cavin Fridell)은 공정무역내의 다양한 관점과 흐름을 다음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⁶⁾

(1) 이익 형성 관점 (shaped-advantage perspective)

이 관점에서 볼 때 공정무역이란 개도국의 일차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관점은 공정무역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마이클 배럿 브라운(Baratt Brown)의 전망 곧 “평행적(parallel) 통상시스템과 그 시스템안에서 초대형 기업이 장악한 지금과 같은 세계무역의 여러 기구와 나란히 커가는 그러한 시스템내에서의 대안적 통상 네트워크”로 부터의 1980년대 후반의 방향전환이후에서 비롯된다. 배럿 브라운의 전망은 이러한 공정무역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아래로부터의 통제와 남의 생산자와 북의 소비자의 직접 접촉을 통한 생산자-소비자연합,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종속과 부등가교환을 극복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각종 공정무역인증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기존 시장에서의 공정무역 상품의 점유를 높이려 하는 흐름이 생성되면서 하나의 일대 방향전환이 이루어 졌고, 결국 공정무역은 신자유주의 세계시장의 ‘틈새 시장으로 주어 진 한계속에서 성장을 맞이하게 된다.

(2) 대안 관점 (alternative perspective)

공정무역이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프로젝트로서 이해된다. 이 관점에선 보자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사실상 은폐된 보호주의이자 초국적기업 및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이익 독점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진정한 ‘자유무역’을 내세운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남반구의 다수 민중을 다시 끌어 들여 새로운 비전의 곧 신자유주의가 아닌 세계화를 강조한다. 이들에게 이 때 시장의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게끔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은폐된 보호주의를 유지한 채, 자유무역이란 이름으로 남반구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의 위선을 비판한다.

(3) 탈상품화 관점 (decommodification perspective)

공정무역은 지구적 자본주의 재화의 상품화에 대한 대안이다. 맑스의 ‘상품물신성’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공정무역이란 자본주의적 축적, 경쟁, 이윤논리를 넘어선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창출해야 하며,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무역의 현실이 반드시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G. 프리델은 공정무역의 현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공정무역 기구의 목표와 몇몇 분석가들의 기대는 이익 형성 관점의 목표와 예측을 넘어선다. 하지만 공정무역의 실제 영향이 그런지는 확실치 않다. 점차 공정무역 네트워크의 방향이 비국가적(monstatist) 친기업적(procorporate)이 되어감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지난 수십년 간의 공정무역의 성공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공정무역이 상품 물신주의에 대한 중요한 상징적 도전이라는 점을 지적한 연구자들은 옳았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여전히 시장에 의해 중개되며 네트워크는 그 협력적 가치를 감퇴시키는 위협이 되는 자본주의적 규범에 의해 궁극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의 힘은 배럿 브라운이 기대한 공정무역의 대안적 기획을 약화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무역에 대한 그의 전망은 강력한 국내

6) Gavin Fridell, Fair Trade and Neoliberalism : Assessing Emerging Perspectiv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151, Vol. 33 No. 6, November 2006.

및 국제 시장 규제와 현존하는 지구적 통상체계에 대한 명확한 대안으로 자리매김될 평행적인 통상체계의 발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배럿 브라운의 대안적 프로젝트에서 이익형성 그룹이 제시하는 온건한 전망으로 옮겨갔다. 즉 한편으로 제한된 수의 남반구 생산자들에게 자급능력을 강화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정무역 가격, 메시지, 시장 점유율은 자본주의의 정언명법에 의해 명백히 제약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공정무역론자들이 이루기를 열망하는 것과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보이는 것 사이의 잠재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저 광범위한 공정무역 기구들의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무역에 대한 급진적 도전으로서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 진입하기를 위한 특정 집단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⁷⁾

3. 현대 무역과 국내정치

국제통상협정과 국내정치의 관계는 이미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것의 성격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미하원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이자, NAFTA와 WTO를 옹호해 왔던, 로버트 Matsui의 패스트 트랙 연장에 대한 아래의 반대토론을 언급해 두자. 그것은 오늘 날 국제무역의 성격이란 것이 더 이상 “관세와 쿼터의 문제라기 보다 국내법을 바꾸는 문제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입법부는 통상협정의 협상 및 체결과정에서 행정부의 들러리가 되어 버림으로써 일종의 권력박탈의 상황이 초래되고, 인민주권에 대한

세계시장의 우위가 확보된다. 이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 미국의 어떤 자유무역주의자의 증언을 들어보자.

“나는 자유무역주의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 이 투표는 그것보다 더 많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무역의 성격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무역은 더 이상 일차적으로 관세와 쿼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법의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입법권은 하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가로서 우리 주권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국제통상 협상가들이 앉아서 협정을 만들어 낼 때, 그들은 ‘비관세 교역장벽’을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독점방지법에서 식품안전에 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 나는 대통령과 무역대표부가 통상협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과 대해서는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원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자가 될 것이라는 적절한 보증이 없이 대외 교역과 국내법에 대한 헌법상의 권위를 행정부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이 과정에 있어 그저 방관자이거나 간헐적인 상담역이 아니라 파트너이어야 합니다. 토마스법안은 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무엇이 오고가는 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국내 환경 보호... 식품안전법... 경쟁정책등. 그것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이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며 그리고 우리 미국인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무역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신속처리권한은 그것과 함께 변해야 합니다. 나는 열렬한 자유무역 원칙이 신봉자입니다. 그렇지만 신속처리권한에 있어 나는

7) Fridell (2006), pp. 23-24.

국내법에 대한 나의 헌법적 권위와 나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동료들께서도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⁸⁾

II 미국의 TRADE 법안

1. 미통상정책에서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⁹⁾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적 접근은 주로 다음을 의미한다.

1) 통상에 대한 자유무역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말한다.

- DDA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
- '딥 도하' (deep Doha) 즉 농업과 서비스부문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제시할 태세
- DDA가 실패할 경우 인도, 한국 또는 일본과의 통상협정을 추진
- 무역촉진권한법 갱신을 위해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
- 중국산 면제품 수입을 저지하라는 의회와 이익집단의 압력에 저항의회와

- 해외 아웃소싱을 저지하라는 압력에 반대
- 보호주의적 위협을 동원하지 않고 중국의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정책을 재고하게끔 설득 (Drezner 2006; 17)

2) 반면 공정무역적 접근은 아래와 같은 태도를 말한다.

- 개도국과 EU가 미국산제품을 더 많이 받아 들일 때까지 DDA협상 재개를 거부
- 개도국과 서명한 양자간 FTA의 개수를 줄이는 것
- 미국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관리무역'과 일반적 무역제재를 사용하는 것
- 중국산 섬유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긴급조항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
- 해외 아웃소싱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이행 조치
- 위안화의 실질적 재평가 강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보호주의적 위협을 구사하는 것 (Drezner 2006; 18)

결국 정책결정자는 주어진 사안과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적 방식과 공정무역적 방식을 '도공자'에서 적절히 선택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정무역이란 앞에서 본 그런 의미의 공정무역과는 상이한 가치중립적인 정책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미민주당이 공정무역적 접근에 좀 더 친화력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TRADE 법안의 주요 내용

2006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미민주당은 의회권력을 탈환하였다. 선거과정

8) Rep. Robert Matsui (D-Calif.), Congressional Record, 147, Dec. 6, 2001, at H9025. Todd Tucker and Lori Walach (2009), The Rise and Fall of Fast Track Trade Authority, Public Citizen's Global Trade Watch, Washington, p.110-p.111

9) 이하의 논의는 W. Drezner (2006), U.S. Trade Strategy Free Versus Fair, Critical Policy Choic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에서 미민주당은 NAFTA 10년, 미유권자들의 '자유' 무역에 대한 비판론, 회의론의 광범위한 확산과 피로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30여석의 '공정무역론자(fairtrader)'들이 자유무역론자들을 낙선시키고 의회에 진출하였다. 이후 이들은 '신통상정책'을 입안하였고, 부시의 USTR을 압박, 이미 페루의회가 비준을 마친 미-페루FTA, 서명을 완료한 상태였던 미-콜롬비아FTA, 파나마FTA, 당시 협상중이었던 한미FTA 모두에 재협상을 요구 결국은 관철시켰다. 당시 한국정부 협상단은 이를 '추가협약 등으로 본질을 호도했지만, 미민주당 입장에서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모두가 노동, 환경 조항을 중심으로한 자신의 의제 즉 신통상정책에 따른 재협상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지난 2008년 11월의 연방선거에서도 미민주당의 공정무역론자들은 마찬가지로 30여석을 확보 세의 확장에 성공하였다.

미민주당의 통상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08년 6월 4일 민주당 상원의원 셔로드 브라운(Brown), 하원의원 마이크 미쇼드(Michaud) 의원의 하원 53명, 상원 4명이 발의한 <TRADE 법안> (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이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내 AFL-CIO, Change to Win과 같은 노동단체, Friends of Earth, Sierra Club과 같은 환경단체, National Farmers Union,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Trade Policy와 같은 농민단체, Public Citizen, Citizens Trade Campaign과 같은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발의되었다. 이 2008년 통상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법안의 내용은 미민주당과 미시민사회내에서 단편적 논의를 넘어 통상정책 개혁의 흐름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현재 이 법안은 2010년 현재 총 148명의 서명을 거쳐, 현 111차 회기에 세입세출위원회등 관련 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미래 통상협정을 위한 진보적 전망을 개척한다"는 부제가 붙은 법안의 주

요내용을 보기로 하자.

먼저 이 법안은 '통상확대를 위한 균형잡힌 경로'라는 이름으로 아래 4가지로 그 의의를 요약하고 있다. "첫째, 이 법안은 통상확대로 가기 위한 보다 균형잡힌 경로를 위한 '정책공간(policy space)'을 표현한다. 둘째, 좋은 협정안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공정한 경로를 가르쳐 준다. 셋째, 이 법안은 새롭고 개선된 통상과 세계화 모델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이동시킨다 넷째, 실패한 정책의 확장에 끊임없이 반대하면서 싸우는 것을 넘어 어디서 새로운 논의가 출발해야 하는지를 표시해 준다."¹⁰

첫째, 재심의(Review) 대상이 되는 모든 통상조약의 목록을 열거하고, 노동환경기준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킨다.

둘째, 2010년 6월 10일까지 연방회계감사국(GAO)는 협정에 따른 국내외 경제적 영향과 각종 안전 및 사회 지표를 포함하여 기존 통상조약에 대한 포괄적 재검의를 실시한다.

셋째, 노동, 환경, 식품, 공산품 안전기준, 국가안보상의 예외 그리고 무역구제와 연방주의의 보호, 강화는 미국의 모든 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모델은 전통적 통상문제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이 부분과 관련해 공공서비스, 농업정책, 투자, 정부조달 그리고 의약품에 관련된 이행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대통령은 현행 협정과 본 법안에서 제시된 기준사이에 연방감사원장이 확인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협상 계획서를, 새로운 협정을 협상하거나 현재 계류중인 협정을 의회가 심의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10) <http://www.citizenstrade.org/pdf/2009TradeActTalkingPoints.pdf>

다섯째, 대통령의 재협상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그 관할권에 있어 오늘날의 팽창적인 “통상” 협정들에 관련된 각 상임위의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한다.

여섯째, 기존 신속협상절차(fast track)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를 위한 ‘비구속적인 의회 결의안(sense of the Congress)’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절차는 미래의 협상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의회의 협상대기 기준(readiness criteria)을 포함하고 있고, 의회가 제시한 협상목표가 충족되었다고 의회가 확인한 뒤, 협정문 서명이전에 의회 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로서 이 법안의 내용가운데 특히 서비스조항, 투자조항은 각별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1) 서비스 기준

협정문에 서비스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이 조항은

- (A) 필수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유지한다
- (B) (i) 계약당사국은 협정문상 계약국의 의무에 해당되는 모든 서비스부문의 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를 제시하도록 한다.
(ii) 협정은 (i)의 리스트에 기재된 서비스부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C) 계약국이 유지하게끔 허용하는 시장접근상의 일반적 예외를 확보하고 국내외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적용될 때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이 금지되어야 한다.

- (D) 미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국 각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미국의 환경, 토지이용(land use), 안전, 프라이버시, 투명성, 전문 자격 그리고 소비자 접근법과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F) 국가안보, 사회보장, 보건, 공공안전, 교육, 물, 위생, 기타 시설, 항만,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약국 각국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탈규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투자기준

협정문에 투자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 (A) 계약국이 자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 (B) 글로벌 금융불안과 무역불안정(volatility)을 감소하기 위해 계약국에 투기자본에 대한 건전성(prudential) 규제를 허용한다.
- (C) 협정상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에 종속되지 않는다.
- (D) 미연방헌법이 미국내 투자자에게 부여한 권리이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 (E) 외국인투자자의 실질 자산 가치의 전부를 파괴하는 정부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 정부간 분쟁 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 (F) ‘투자’라는 용어는 자본의 투입(commitment) 또는 실질 자산의 획득이상을 의미해서는 안되며, 위협의 가정 또는 이익 또는 이윤의 기대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G) '투자자'라는 용어는 위(F)호에 기술된 자본의 투입(commitment) 또는 획득 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H) '직접수용'이란 용어는 정부조치로 인해 소유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의 모든 가치가 그로 인해 항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 천연자원, 공공근로 또는 정부통제하 기타 활동과 관련 체약국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간의 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는 제공되지 않는다.

(J) 최소대우기준은 제14차 개정헌법 제1부상의 적정절차조항에 의거 미합중국 시민이 누리는 법적 권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한다.

요약하자면 서비스부문에서는 (1) 네거티브리스트대신 포지티브리스트의 채택 (2) 필수 공공서비스부문에 대한 민영화 및 탈규제 반대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 ISD 적용 배제 (2) 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3)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 제한 (4)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권리제한등이 그 요점이라 하겠다.

노동, 환경 기준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외 조항들을 살펴보자면 이렇하다.

(3) 식품 및 공산품 위생 안전기준

협정문에 위생, 안전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A) 식품, 사료,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타 관련 식품은 식품안전, 병충해, 검사, 포장 그리고 라벨링과 관련된 미합중국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때에만, 체약국으로부터 미합중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된다.

:

(C) 그러한 기준이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한다고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위생, 안전기준 의무를 체약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4) 정부조달 기준

협정문에 정부조달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A) 체약국은 협정상 체약국의 의무가 적용되는 제조업부문, 제품 및 서비스의 열거목록(positive list)를 제시해야 한다.

(5) 지적 재산권 기준

협정문에 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

(B)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지재권협정(TRIPS)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에서 확립된, 특히 협정 가입국이 결정한 근거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촉진과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발동과 관련된 유연성과 권리를 명시적으로 또는 그 적용에 있어 제한하지 아니하는 특히 관련 조항만을 포함해야 한다.

(6) 농업기준

협정문에 농업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A) 계약국의 농민들에게 적절하고 안정적인 시장 소득을 보장한다.

(B)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적절하게 공급하도록 보장한다.

:

(D) 계약국의 농업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다.

(7) 무역구제와 세이프 가드 기준

협정문에 무역구제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

(D) 수입품 범람으로 인한 미합중국 노동자, 기업 또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합중국이 적절한 세이프가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며, 아울러 이 세이프가드가 일정 기준하에 자동 발동되는 것을 포함한다.

(E) 계약국은 상당한 통화 이동이 무역에 미치는 결과를 조사하고, 일국의 통화가 국제무역상 비교우위를 촉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게(misaligned)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기구를 설치한다.

(F) 만일 계약국 일방의 통화가 의도적으로 불합리하다면(deliberately misaligned),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통화이동을 상쇄하기 위해 자동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구제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미FTA 협정문과 비교해 볼 때, 2010년 통상법 초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한미FTA 협정문의 사실상 본질적 변화는 물론이고 협정문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협상 당시 정부측은 미국형 FTA의 핵심 구성요소가운데 하나인 '네거티브리스트'의 채택을 세계적 추세인 양 자랑스러워했고, 자통법 역시 여기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다. 2010년 미통상법 초안에서 포지티브 리스트의 채택은 정부조달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한미FTA 협상 당시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물등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서비스산업 '선진화'이라고 강변했는데, 신 통상법 초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아가 ISD는 협상 당시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되었고, 투자, 투자자의 정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투자계약'이 포함되었고 또 ISD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미 2002년 통상법상의 조항 즉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내에서 미국투자자보다 더 우월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그것도 협정문 서문에다 받아적었다.

지적 재산권 조항에서도 의약품 접근권과 '강제실시권' 언급은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와의 상충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실 이는 미민주당의 신통상정책에서 이미 철폐를 언급한 내용이다. 하지만 한미FTA 재협상과정에서 우리는 이를 전혀 관철시키지 못한 바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2008년 한미쇠고기협상을 떠 올릴 수밖에 없고, 한미FTA 농업조항이 2010년 통상법과 조화되는 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무역구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며, 환율시장 불안의 만성화로 가고 있는 한국 환율시장의 상황에서 볼 때 외환의 급격한 진출입과 관련된 세이프가드를 재검검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부실 협상 사례인 금융세이프가드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역시 엔터티 협상의 전형

인 바, 미 신통상법의 취지에서 보자면 전면 재협상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 신통상법의 항방과는 관계없이 이 법안은 미국내에서 통상정책 개혁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미FTA의 핵심조항과 상당부분 상충하는 것들이다.

III 유럽의 대안무역 논의

1. EU의 통상정책의 전환: '글로벌 유럽' 전략

EU의 신통상정책이라 할 <글로벌 유럽: 세계속의 경쟁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이라는 정책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그 주요한 특징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첫째,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결합, 둘째, 지정학적 차원으로 새로운 회원국 확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선린정책, 새로운 성장시장으로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자원시장으로서 아프리카등에 대한 주목. 셋째, 내용적으로 상품, 서비스, 지재권에서 WTO 플러스추구, 영업 및 투자, 공공조달등의 새로운 이슈모색,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우편, 금융, 경쟁규범, 기술표준등에 대한 규제에 있어 대외적 '조화'의 문제와 대내적 협력 넷째, 경제파트너협정(EPA), 특혜관세체계, 정치, 문화적 협력등.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글로벌 유럽' 전략은 EU 통상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글로벌 유럽전략은 FTA와 관련해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장잠재력이다. 곧 시장규모와 성장전망을 의미한다. 둘째, EU 수출에 대한 보

호여부이다. 이는 관세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재권, 위생검역, 기술표준, 공공조달, 경쟁 그리고 투자를 포함한 비관세장벽을 포함한다. 관세가 점차 낮아 짐에 따라 후자의 역할이야말로 EU의 포괄적 FTA 전략에 있어 핵심이라는 것이다. EU의 FTA전략은 기본적으로 제3국 시장에서 미국, 일본과의 경쟁이다. "EU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제3국의 급속한 증가는 EU가 주변화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EU의 이익에 대한 장벽이 높을 수록, 그러한 FTA에 포함된 무역 전환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NAFTA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당시 EU는 캐나다와 무역흐름에서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EU는 멕시코에서 상당한 시장 손실을 입은 바 있다."

나아가 EU 집행위는 FTA의 내용으로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쟁력을 추구하는 FTA의 효과는 비관세장벽의 돌파에 의해 대부분 판정된다. 신평타는 물론 그 범위에 있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철폐와 모든 공급모드를 포괄해 서비스무역에서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대방이 EU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완전 등가성(parity)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입쿼터와 모든 형태의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 세급, 부과금, 제한등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래의 FTA는 EU업체의 이익과 과거 EU가 체결한 FTA의 경험에 비추어, 비관세장벽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FTA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항상 제공해 주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 것 처럼, 지재권, 위생검역 또는 기술표준과 관련 그것들의 부가가치는 한정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규제투명성의 결여를 업계측은 EU가 FTA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나라에서 핵심문제로 인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다수의 비관세장벽의 뿌리이다. ... 새로운 통상 협정내에 규제수렴을 목표로 한 협력 도구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신세대 FTA는 또한 투자, 지적권 그리고 경쟁관련 새로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인도, 한국 그리고 ASEAN과 같은 우리의 잠재적 파트너들은 투자관련 매우 높은 수준의 협정을 원하고 있고, 이는 현재 EU가 체결한 FTA의 관련 조항들을 넘어 선다. 새롭고 포괄적인 EU의 투자 협정 모델은 회원국과의 밀접한 협력하에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는 다른 영역은 지적권이다. 이 분야에서 EU의 현 FTA는 매우 약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 마지막으로 미래 FTA의 경쟁조항 또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¹¹⁾

위에서 보듯 EU의 글로벌 유럽에 입각한 통상전략 특히 FTA 전략은 세계시장에서의 EU경쟁국인 미국, 일본등을 염두에 둔 매우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FTA등 양자간 통상협정에서 EU 집행위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비관세장벽 부문임을 알 수가 있다.

당시 EU의 통상장관이었던 피터 만델슨은 2006년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 글로벌 유럽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지가 잘 드러난다. “경쟁력의 외부 측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제대로 된 국내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유럽의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또 확고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의 의제다.”

(2006년 9월 18일 베를린 Churchill Lecture에서 행한 EU 통상장관 피터 만델슨의 연설)

11)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RAFT COMMUNICATION ON EXTERNAL ASPECTS OF COMPETITIVENESS], Brussels, 28 June 2006

12) Seattle to Brussels Network, The new 'lobal Europe' strategy of the EU: Serving corporations worldwide and at home. A wake-up call to civil society and trade unions in Europe and elsewhere

하지만 이에 대한 유럽 시민사회측의 의문은 이러한 것들이었다.¹²⁾

- 제단된 정책의 모든 범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 개도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무역자유화의 지속이 일자리의 수와 질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 통상정책과 관련된 이민자 유입은 없는가?
- EU나 외부의 기업이 아무런 공개 토론없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특권적 접근권을 가진다면 어떤 거브넌스 모델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 어떻게 기후변화와 통상정책이 연결되는가?
- 왜 제단된 모델로부터 소비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가?
- 더 많은 경쟁과 경제성장 추진의 사회, 환경 그리고 문화적 비용은 무엇인가?

셀린 차베리아(Celine Charveriat) Oxfam의 Make Trade Fair 운동 대표의 언급을 인용해 보자.

“마침내 늑대가 양의 가죽을 벗어버린 것 처럼 보인다. 이것은 발전에 대한 립 서비스말고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은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의제이다. 개도국들이 WTO에서 끊임없이 거부했던 쟁점들에 대해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자유 무역협정을 이용하려는 EU의 계획은 다자주의를 와해시키고 빈곤과 불평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EU 자신은 유사한 장벽을 유지하고 엄청난 액수를 무역왜곡적 농장 보조금으로 지불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위선적이다.”

마찬가지로 옥스팜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내었다.

- "개도국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투자 경쟁 정부조달등에서 WTO 표준을 능가하는 발전저해적인 조건을 강요하기 위해 FTA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추종하는 명백한 의도
-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에 대한 필요를 승인하는 것과 식품안전과 생필품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산품을 보호할 권리에 반대되는 그런 통상협상에서의 높은 수준의 상호성에 대한 요구
- 개도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농민으로부터 종자소유권을 박탈하게될 강력한 지재권과 집행에 대한 요구
- 결론적으로 "이것은 경쟁력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수출하기 위한 계획이다. 회원국은 EU 집행위로 하여금 이 계획을 재고토록 해야 한다."¹³

정의로운 무역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 역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피터 만델슨이 제기한 진짜 위협은 국내전선에 있음이 자명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노동자의 권리, 기후변화 또는 유럽의 사회모델 자체가 만델슨의 전망에 걸림돌이다. 국내 의제는 3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진다. EU 내부 시장의 지속적 자유화, '좋은 규제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따라 심사하도록 견제)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경쟁국의 그것과 맞추는 규제수렴 (대부분 미국의 그것과)'¹⁴

다른 한편 유럽노조연맹(ETUC)은 "특히 서비스산업의 민감부문에 있어 이러

13) Oxfam warns proposed new EU trade policy is 'development blind', Oxfam International, press release, 4 October 2006.

14) The new 'Global Europe' strategy of the EU: serving corporations worldwide and at home. A wake-up call to civil society and trade unions in Europe and elsewhere, Seattle to Brussels Network, November 2006.

한 신FTA를 통해 제3국에서의 시장개방의 확대만을 위해 지불할 가격말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도국에서의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자유화의제를 위해 제안된 유럽 통상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전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광범위한 전유럽적 재논의를 촉구하였다.¹⁵

그리고 집행위 결정은 규칙과 기준을 통상과 '레드 테이프'의 장애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이 개념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장악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유럽의 규제와 기준은 오직 경쟁력이라는 요구에 의해서만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¹⁶

하지만 유럽업계를 대표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EU집행위는 제대로된 채널을 맞추는데 있어 아주 효율적이다." 또한 이 단체의 필립 드 벅 사무총장은 "집행위의 개정된 전략이 시작이 되면, 나는 만델슨이 전세계에 걸쳐 시장접근대사로 더 자주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그가 이 새 타이틀에 만족했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는 이 '새로운 의무'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 들였다."¹⁷

15) Resolution adopted by the ETUC Executive Committee in their meeting held in Brussels on 7-8 December 2006 On the Communication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Last modification, 27 February 2007.

16) Resolution adopted by the ETUC Executive Committee in their meeting held in Brussels on 7-8 December 2006, On the Communication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Last modification, 27 February 2007.

17) Market Access Seminar: "The Market Access Partnership: What do you expect and How Can You Contribute?" Plenary session. The Market Access Partnership: One Year of Implementation", Brussels, 4 June 2008, Address by Philippe de Buck, BusinessEurope Secretary General.

결국 요컨대 글로벌 유럽 전략이란 대외적으로는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특히 서비스, 투자, 지적권, 공공조달, 경쟁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다. 이 중심에 새로운 FTA가 놓여 있다. 그러는 과정에 직전 통상 장관이었던 파스칼 라미 당시의 FTA 모라토리움은 기각되었다.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대내적 차원에서는 규제완화와 자유화가 그 핵심이다.

2 유럽의 대안적 통상/투자정책의 <목표>¹⁸⁾

그렇다면 대안적 통상 및 투자정책 모델은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내에서의 TRADE 법안을 통한 통상문제의 성공적 공론화에 자극받은 유럽의 NGO들이 모여 EU차원의 통상 및 무역대안의 공론화 작업의 결과물이 여기서 소개하는 소책자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Seattle to Brussels Network>, 각국의 Attac, 공정무역관련 단체, Oxfam, Transnational Institute 등 노동, 환경, 공정무역, 여성, 인권, 농민등 유럽의 주요한 NGO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 책자의 내용은 글로벌 유럽전략과는 정확히 대척적인 위치에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여기서 유럽의 시민사회는 새로운 통상거브너스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일단 이 소책자에 따르면 대안적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적절한 식량 물, 건강, 신체의 유지 의복 주거, 교육, 사회보장, 이동, 문화 여가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충

족하는 것

- 적절한 소득과 노동권을 포함하여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의 보장
- 재생산을 위한, 간혹 공동체와 비공식적 노동의 중요성과 특히 여기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형태의 노동과 남녀간의 동등한 보상의 공평한 재분배외 재조직화를 보장하는
- 타인, 다음 세대의 생계 그리고 동식물군을 위협하지 않는 존엄한 삶을 가능케 할, 과잉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당한 자원이용에 기초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보장하고
- 모든 수준의 정책결정의 의미있는 민주화를 이루어 내고
- 나라, 지역, 남녀, 계급 카스트 그리고 인종집단간의 구조화된 권력관계를 타파하고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인간집단의 힘을 부여하고
- 빈곤을 퇴치하고 다른 지역의 인간과의 새로운 공평한 연대를 수립하며
- 협소하게 유럽 GDP의 증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웰빙의 수준을 고양시킨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에게 '정의로운(just) 통상 및 무역정책'이란 무엇인가?¹⁹⁾

- 인권, 여성의 권리, 노동, 환경 그리고 기후에 대한 국제 관습과 조약이 무역과 투

18) Seattle to Brussels Network (S2B) et al., Towards an Alternative Trade Mandate for the EU (<http://www.s2bnetwork.org/themes/towards-an-alternative-trade-mandate-for-the-eu.html>)

19) 진보적 경제학자그룹인 유로메모란둠 역시 아래와 같은 대안적 통상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①투명성제고와 EU와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통상정책관련 논의에 모든 관련 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 ②특히 사회 및 환경기준을 글로벌 통상레짐에 통합시킴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통상 관계의 지원 ③세계화과정으로부터 노동의 보호 ④불공정경쟁에 대한 통상방수단의 사용 ⑤저발전 국가(LDC)에 대한 특혜 대우. EuroMemorandum Group, A Democratic Economic Policy Alternative to the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Europe, EuroMemorandum 2006, December 2006

자 레짐의 우위에 있음을 인정한다.

- 단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기 보다 나라, 지역 그리고 공동체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를 규제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들 자신만의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수입, 수출 그리고 투자의 규제를 허용한다. 예컨대 지하광물자원의 민주적 통제와 공공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수출제한을 무역 과 투자협정을 통해 금지해서는 안된다.
- 공동체가 상호 지원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공평한 자원과 부의 관리를 위 한 공동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중중심적 지역통합에 기여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가급적 직접적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통상 네트워크를 지지 한다. 유럽은 식량주권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나라와 공동체가 글로벌 농업무역 에 대한 지방과 지역의 식량시스템을 우선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유럽정부와 의회는 사회적 환경적 결과와 전세계적인 그들과 그 지사들의 활동의 영향에 책임 이 있는 유럽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구속력 있는 사회적, 환경적 규제를 강제하고 글로벌 가치체인상의 완전한 투명성 을 허용한다. 민중은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었는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포 함하고 있는 지를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한다. 무역 규칙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사회 적 환경적 기준에 따라 예를 들어 공공당국의 공정한 조달관행의 촉진을 통한 재화 와 서비스를 우선해야 한다.
- 예컨대 오픈 소스 시스템, 종자교환이니셔티브 또는 특허 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접근을 제고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등을 통해 지식의 교환과 자유로운 접 근을 장려한다. 생명에 대한 특허는 금지한다.
- 금융서비스의 규제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물, 건강 그리고 교육등 공공재에 대한 민

영화와 탈규제를 중단한다. 예컨대 공공 당국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공공재 의 질과 접근을 개선한다.

나아가 '정의로운' 통상 및 투자 정책은 아래와 같은 결정과정상 필수조건을 요청하고 있다.

- 정책결정과정의 완전한 투명성
- 지방에서 전유럽 수준에 이르기까지 의회가 핵심 역할을 할 것. 의회는 무역 및 투 자의제를 설정하고, 정책결정과정과 협상의 모든 단계에 적극 참여하며 협정 발효 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대중에 공표해야 한다.
- 예컨대 민중들이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여지를 열어 줌으 로써 민중의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와 절차를 결합한다.
- 무역과 투자정책은 글로벌 정의뿐만 아니라 인권, 여성의 권리, 노동, 환경과 기후 와 부합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의무적이며 포괄적인 평가와 개정에 복속된다.
- 글로벌 가치사슬의 실질적 민주화. 생산과정과 자원은 공공의 규제와 통제에 복속 되며 사기업의 권력은 제한된다.
- 타국의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존중과 유럽의 세계 여러 지역과의 현재의 무역관 계를 특징짓는 일방주의와 완력전술의 포기
- 무역과 투자 정책을 통할하는 국제구조와 제도의 민주화와 이 정책에 있어서 UN 역할의 확대와 강화

그래서 이들은 당면한 과제로 다음을 설정하고 있다.

- EU통상정책과정을 의화와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 회계와 검증에 개방할 것
-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상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포함하여 글로벌 유럽 전략의 즉각 중단
- 기존 조약 및 협상중인 조약, 유럽투자은행(EIB), 세계은행, IMF등과 같은 국제금융 기구와 WTO내에서의 EU의 입장을 포함하여 유럽의 무역 및 투자정책의 포괄적 재평가
- 여기서 개발된 비전에 부합되지 않는 무역 및 투자정책에 대한 재검토

〈표1〉 FTAA와 ALBA의 비교

FTAA	ALBA
• 초국적 자본이나 다국적 기업의 기업활동과 자본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 관세완전철폐와 규제완화 자유화 실시 • 미국기업의 투자, 경제자원과 북미시장 접근권 보장을 통해 체결 유도	• 회원국가의 주권을 존중해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적 보완성을 중시 • 국내 사업의 진흥과 국내 시장의 민감한 영역을 보호 • 사회적 공공 서비스의 국가개입을 중시 • 빈곤, 문맹 퇴치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시 • 원주민이나 중소기업, 환경보호에도 초점을 맞춤

IV ALBA-TCP_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자유무역지대 곧 이른바 FTAA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아래 〈표1〉 참조) 하지만 2001년 차베스를 비롯한 다수의 남미 국가와 사회운동, 노조등이 연대해 이를 저지하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베스정부는 '자유' 무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통합전략을 창출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로 2004년 탄생한 것이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 곧 ALBA였다. 처음 ALBA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2개국으로 출발하였다. 2006년 볼리비아가 여기에 동참하였고, 기존 ALBA에 민중무역협정 곧 TCP를 더해 이후 ALBA-TCP가 되었고, '대안(Alternative)'를 '동맹(Allianza)'으로 개명한 바 있다. 2007년에는 니카라과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서 현재 4개의 정식회원국과,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도미니카, 안티가바바다, 세인트벤센트그레나딘가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²⁰⁾

ALBA-TCP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다. 2007년 개최된 제5차 ALBA-TCP정상회담에서 결의된 조직체계를 보면, 우선 '의장이사회'와 '각료이사회'가 있고, 여기에 더해 '사회운동 이사회'가 있다. 이 사회운동 이사회를 통해 현재 남미 최대의 사회운동단체인 브라질의 '무토지 농민운동(MST)'과 비아 캄페시나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산하에는 각종 위원회, 곧 정치, 사회, 경제, 투자금융, 에너지, 환경,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그 목표로 다음이 제시되어 있다.

- 이윤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목표로 협력에 기초하여 회원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한다.

20) 자세한 경과는 Shawn Hattingh, ALBA: Creating a Regional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07/02/08 Monthly Review, 참조

- ALBA회원국간 자유로운 보건의료와 자유로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
- 민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원국의 에너지부문을 통합한다.
- 미국과 지역내 신자유주의 매체와 균형을 맞추고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인매체를 창출한다.
- 회원국내 토지재분배와 식량안보를 확보한다.
- 국영기업을 발전시킨다.
- 회원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초산업을 육성한다.
- 노동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을 촉진한다.
- ALBA의 프로젝트는 친영친화적임을 보장한다.

〈표2〉 ALBA-TCP 회원국 (2009년)

국 가	가입일	인 구	면적(km ²)	GDP(단위:10억불)
베네주엘라	2004.12.14	28,199,825	916,445	358.623
쿠바	2004.12.14	11,451,652	110,861	108.2
볼리비아	2006.4.29	9,119,152	1,098,581	43.424
나카라과아	2007.2.23	5,891,199	129,495	15.89
도미니카	2008.1.20	72,660	754	.7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즈	2009.6.24	120,000	389	1.085
에쿠아도르	2009.6.24	14,573,101	256,370	106.993
안티과아&바뷰다	2009.6.24	85,632	442	1.546
총 8개국		69,513,221	2,513,337	636.481

그렇다면 ALBA-TCP의 구조와 활동을 보기로 하자. 아래 〈표2〉에서 보듯 2009년 기준 ALBA-TCP는 인구 약 7천만명을 포괄하고 있고 역내 GDP 약 6천

3백억달러의 그자체로 크지 않은 중소규모의 지역통합체임을 알 수 있다. 베네주엘라의 GDP가 3천6백억달러수준이고 쿠바의 경우 천억달러, 에쿠아도르 역시 비슷하다. 쿠바 역시 그 절반수준이다. 적어도 경제규모면에서만 보자면 베네주엘라가 사실상 주도적이라 할 만하다.

ALBA-TCP의 최초 체결국인 베네주엘라, 쿠바사이의 2004년이후의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표3〉에 나타난 것처럼 2005년 협정발효이후 베네주엘라의 대쿠바 수출이 10억달러 규모에서 35억달러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액 가운데 석유 및 관련 제품이 34억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 및 관련 제품의 수출추이에 따라 베네주엘라의 대 쿠바 수출 또한 변동하고 있다.

〈표3〉 베네주엘라의 대 쿠바 무역(2000-2009,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13,230	15,879	11,480	647,190	1,006,947	3,550,440	1,669,830	2,390,077	3,824,529	2,683,886
석유/석유제품	0	0	0	632,616	918,058	3,440,329	1,592,109	2,335,482	3,750,758	2,660,804
석유아래	13,230	15,879	11,480	14,574	88,889	110,111	77,721	54,595	73,770	23,083
수입	6,205	13,754	4,636	96,223	105,205	52,997	30,465	31,868	35,786	293,904
무역총액	19,435	29,632	16,116	743,413	1,112,152	3,603,437	1,700,294	2,421,945	3,860,314	2,977,790
수지	7,024	2,125	6,844	550,967	901,742	3,497,443	1,639,365	2,358,209	3,788,743	2,389,982

반면 ALBA-TCP의 또 다른 초기 가입국인 볼리비아와 베네주엘라의 교역을 보면 협정이 발효된 2006년 이후 대 볼리비아 수출이 급증하는 데 7백만 달러 규모에서 4천3백만 규모에 달한다. 그 때까지만 해도 베네주엘라와 볼리비아 간에는 석유 및 관련제품의 교역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베네주엘라의 대 볼리비아 수

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볼리비아로부터의 수입을 보면 협정 체결 직전 2억달러 규모에서 협정발효후에는 3억달러 대로 1/3 정도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ALBA-TCP의 핵심 3국인 베네주엘라, 쿠바, 볼리비아간의 협정 발효이후의 교역추이만을 놓고 본다면 베네주엘라의 석유를 중심으로 협정후 교역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베네주엘라의 대 볼리비아 무역(2000-2009, 단위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2825	2232	3565	6310	4461	6877	42776	51,311	62761	26275
석유/석유제품	0	0	0	58	65	45	40,776	47,444	32731	23,293
석유외	2825	2232	3565	6252	4396	6832	2450	3867	30,030	2982
수입	90,622	178,209	158,322	160,774	205,039	210,851	319,163	327,163	388,368	328,956
무역총액	93,622	180,441	161,887	167,085	209,500	217,729	361,939	378,474	451,128	355,231
수지	-87,973	-175,977	-154,757	-154,464	-200,578	-203,974	-276,388	-275,852	-325,607	-302,681

하지만 ALBA-TCP는 단순히 교역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다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인 통상협정의 경우처럼 교역량증대를 통한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목표인 반면 TCP 즉 민중무역협정의 경우 이에 대한 ‘대안적 지역 통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의 쿵을 들 수 있다. 2006년 콜롬비아와 미국사이의 협정으로 인해 볼리비아의 쿵 수출이 격감하자 베네주엘라와 쿠바가 나서 볼리비아산 쿵을 구매해 주었다. ALBA-TCP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물거래 방식이다. 예컨대 베네주엘라는 쿠바에 매일 9만 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쿠바의 발전된 의료기술과 2만명이 넘는 의사

를 베네주엘라 빈민가에 파견해 무상 의료를 시행케 했다. 이를 통해 베네주엘라는 ‘바리오 아덴트로(Barrio Adentro)’라는 민중 재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볼리비아에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한 베네주엘라의 대 아르헨티나 석유수출액 가운데 5% 상당에 대해서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예컨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로 결제한다.

석유를 매개로 한 차베스의 지역통합전략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투자 금융부분이다. 2007년 제1차 ALBA-TCP 각료회의에서 은행설립이 제안되었고, 2008년 제3차 ALBA-TCP 정상회담에서 지역공동체의 결제수단으로 수크르(SUCRE) 창립을 위한 여러 기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08년의 6차 ALBA-TCP 정상회담에서는 베네주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쿠바정부는 ‘ALBA은행’의 초기 자금을 승인하고 이후 세부적인 협정내용에 합의하였다. 2009년 말 제5차 ALBA-TCP 특별정상회담에서는 수크르 지역 지불보상 단일 시스템의 마르코(Maroco)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월 10억불 규모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ALBA은행은 IMF나 세계은행과는 달리 “대부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회원국의 합의에 기초해 작동한다. 은행의 목적은 회원국간의 산업과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프로젝트 및 특히 에너지분야에 있어 회원국간의 다자간 협력을 지원 하는 것이다.”

2007년 2월 베네주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주도로 시작된 남부은행(Banco del Sur)는 자못 다른 상황전개를 보여준다. 볼리비아에 이어 에콰도르, 파라과이, 브라질, 우르과이등이 뒤를 이었고, 2007년 12월 남부은행은 창립되었고, 7개국 이 회원국이다. 남부은행에는 3개의 그룹이 존재되어 있다. 첫 번째는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등의 ALBA 또는 여기에 가까운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처럼 자본주의적 발전정로를 가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금융자립이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해 그 영

향권하에 있으면서 남부은행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칠레와 페루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FTA에 서명했지만, 동시에 남부은행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경우다.

따라서 내부에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은행이 창설되었지만 아직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먼저 남부은행이 통화안정기금과 개발은행 둘 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지 아니면 후자로 가야 하는지 여부인데 일단 후자로 결론이 났다. 둘째, 의결방식과 관련 1국1표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출자금 규모에 따를 것인지가 쟁점이다. 셋째, 은행이 회원국의 출자금으로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본시장이나 국제금융기구등으로 부터도 자금을 모을 것인지 여부다.²¹⁾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직면해 2009년 4월 7차 ALBA-TCP 정상회담은 미국이 주도한 제5차 전미주정상회담 선언문에 대해 강력한 비판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성명에서 이 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 변화, 식량위기 그리고 에너지위기는 자본주의의 부패의 결과이다. ... 이러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4. 미주대륙의 새로운 현실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우리,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우리 자신의 제도화를 시작했다. 그 제도화란 우리의 독립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의 역사에 기초하며, 우리의 완전한 주권을 강화시킬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변혁과정을 구성할 것이다. 단지 최근에 만들어진 것만을 들더라도, ALBA-TCP, 페트로카리브 또는 UNAMUR등은 스스로의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 민중들의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그런 변혁속에서 창출된 연대에 기반한 단결의 메카니즘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해, 우리 ALBA-TCP 국가들은 부적절한 국제경제질서의 실패한 제도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자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모색할 창의적이며 변혁적인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결제단위, 정산거래소, 단일준비금시스템을 포함하는 지역결제 통합시스템 수크르(SUCRE)를 실행하

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중들의 필수적인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대형 국영기업을 창설을 장려하고, 무제한 경쟁의 어리석은 논리를 제쳐버린 공정하고 보완적인 통상메카니즘을 만들어 내었다.”²²⁾

지금까지의 ALBA-TCP를 살펴볼 때 다음 두가지의 한계를 일단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ALBA-TCP의 하향식 논의구조는 흔히 대중의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기회를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ALBA의 변혁적, 사회주의적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다.

둘째, 베네주엘라 일국가에 대한 ALBA의 과도한 의존을 들 수 있다. 사실 베네주엘라 정부의 리더쉽과 재정적 지원이 없는 ALBA는 생각하기 어렵다. 대다수 ALBA 프로젝트는 베네주엘라 석유붐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유가가 배럴당 150불이었던 데 비해 이후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베네주엘라가 약속한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 여부가 의문시 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세계금융위기도 ALBA에겐 양날의 칼이다. 금융위기가 ALBA의 대안적 통상 및 투자 시스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유가하락은 ALBA의 여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된다.²³⁾

21) Martin Hart-Landsberg(2009), Learning from ALBA and the Bank of the South.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MR, 2009.9

22) 위의 글.

23) 위의 글.

V 자유무역과 문화_〈문화다양성협약〉의 경우

1.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무엇인가

- (1) 문화다양성협약이란 말 그대로 경제와 시장의 막무가내 세계화에 의해 위협받는 문화생태계를 각 나라의 '문화주권'을 통해 막아보고자 하는 협약이다. 특히 이 협약은 문화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마련하기 위한 거의 최초의 국제협약이라고 볼 만하다. 따라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미국조차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WTO, FTA와 같은 경제통상조약과 이 협약의 관계이다. 그래서 협약 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즉 이른바 '관계' 조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이라는 3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협약 제20조 제1항 제2조는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take into account)"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달리 말해 한국이 FTA등과 같은 통상조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 정부는 상호지원성, 보완성, 비종속성의 원칙하에 문화다양성협약의 관련 조항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 (2) 모든 국제조약은 약속의 준수를 전제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발생한다. 그래서 분쟁해결절차를 조약에 정해놓기 마련이고 이 절차는 대개의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이다. 문화다양성협약 역시 제25조에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교섭, 주선,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협약 부속서(Annex) <조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협약은 이 조

정절차를 각국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부속서상의 조정절차에 따르면 분쟁당사국은 각각 지명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성실히 '고려'해야 한다.

문화와 통상 _ 문화다양성협약과 한미FTA의 경우

우선 문화다양성 협약의 관련 내용을 짚어 두자.

- (1) 아래 협약 제6조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국의 정책적 권리와 관련 문화다양성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위한 각종 스크린쿼터와 같은 정책적 규제와 특별히 미디어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권리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는 체결국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즉 문화다양성 협약의 일반적 원칙으로 천명된 '문화주권' 이므로 향후 한국이 당사국이 되는 모든 조약에서 한국은 이 권리와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이 상충되지 아니하게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이른바 한미FTA에서 서비스, 투자와 관련 이미 합의한 역진방지메커니즘(래치조항) 즉 시청각 서비스 분야가 현행유보되었을 경우 오직 무역 자유화의 증진이라는 한 방향만으로서의 변경을 사전에 강제하는 것은 문화주권의 사전적 제약이 될 것이므로 역시 논란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유보안에 등재되지 아니한 시청각분야를 포함한 미래의 모든 서비스산업을 자동유보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제6조 당사국의 자국내 권리

1. 제 4.5조에서 정의된 바 문화 정책의 틀 내에서 각 당사국의 특정한 상황과 필요성을고려해 각 당사국은 자국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러한 조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제 조치

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이용되는 언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가운데 자국의 것이 창조, 생산, 보급, 유통, 향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다) 비공식 부문의 독립적 문화 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유통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수단

라) 공공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

마) 비영리 조직, 공공, 민간 기관, 예술가 및 기타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창조적 정신과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

바) 적절하게 공공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사) 예술가 및 문화적 표현의 창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 공영 방송 이용을 포함하여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b) 공영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조치

(2) 마찬가지로 협약 제7조는 ‘소수자’와 특수상황이나 요구와 관련하여 계약국이 자국의 문화적 표현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hall endeavor).

(a) 소수자나 토착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물의 창작, 제작, 보급 및 배포와 그 활용을 위한 기회 제공

(b) 자국 영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일종의 ‘문화세이프가드’ 조치를 언급한 제8조는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물의 ‘심각한 위협’과 관련 문화다양성 협약에 규정된 ‘모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에 하나 한국영화가 미국영화에 밀려 ‘소멸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때, ‘모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야 하지만, 한미FTA에서 래치원칙하에서 영화, 방송쿼터에 대한 현행유보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충돌여지가 발생한다.

제8조 문화적 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1. 제 5조와 제 6조의 조항에 대한 편견없이, 각 당사국은 자국내 문화적 표현물이 소멸의 위기, 심각한 위협, 혹은 아니면 긴급 보호조치(safeguarding)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위 제 1항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문화적 표현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4) 다음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제20조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의 사실상 핵심이라 할 제20조는 3가지 원칙 상호지지성(supportiveness),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그리고 비종속성(non-subordination)을 천명한다.

제20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상호 지지성 (mutual supportiveness),

상호 보완성 (complementarity), 비종속성 (non-subordination)

1. 당사국은 본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기타 협약에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인식한다.

(1) 본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2)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shall take into account).

2.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여타 조약 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제20조 제1항은 주로 유럽의 입장을 2항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20조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 2개의 주장을 적절히 타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교부가 유보하기를 원하는 조항은 제20조 제1항 제2호 즉 '고려' 조항이다. 예컨대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문화다양성협약상의 규정을 '성실히' '고려' 했는지가 우선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위 '노력' 의무와 더불어 '고려' 의무의 폭과 수준은 논쟁 여지가 다분하지만, 최소한 조화를 기할 의무는 부인하기 어렵다. 통상과 문화의 법적 공방은 어

쥬 수 없는 것인가.

(5) 영화, 방송을 비롯한 시청각 서비스, 뉴스제공업을 비롯한 각종 매체,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정의된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등 한미FTA와 문화다양성협약의 포괄범위는 상당히 중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부문의 저작권의 대부분도 문화다양성협약의 대상인 '문화콘텐츠'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다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한미FTA에 담겨있는 통상 절대주의에 맞서 이를 견제하고 최소한의 이익의 균형 이라도 확보해 내기 위한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어기제가 될 수도 있다.

첫째, 한미FTA 노동챕터 협상에서 미국은 미민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속에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노동기준의 완화등과 같은 노동자 보호수준 저하는 금지된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으로 노동3권의 예외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등과 한미FTA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논리를 문화에 적용할 경우, 한미FTA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증진할 목적으로 문화다양성을 훼손하거나 최소한 그 보호수준을 저하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 취지와 목적에 상충될 수 있다.

둘째, 한미FTA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방식과 래칫조항은 한국의 미래 문화주권을 위협하고, 현재 문화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네거티브리스트방식에 따라 한국의 미래 문화서비스 산업은 자동개방된다. 이는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한국정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현재의 문화다양성 보호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일방통행식 정책운용이라는 것이다.

셋째, 분쟁해결 챕터에 포함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품, 서비스, 원산지, 지재권, 정부조달등 한미FTA 거의 전분야에 대해 적용된 비위반제소 조항의 경우, 비록 협약을 실제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합리적 기대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받았을 때 제소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설사 스크린쿼터, 방송쿼터등이 한국정부가 원하는 대로 ‘미래유보’로 타결되었다 하더라도, ‘비위반제소’ 조항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래 한국 영화시장의 수급상황이 악화된 뒤, 한미FTA 미래유보에 근거 만약 한국정부가 향후 스크린쿼터를 늘였을 경우, 설사 한국정부가 FTA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73일을 기점으로 투자한 미국의 극장사업 투자자는 ‘비위반제소’ 조항에 의거 73일을 기준으로 한 소위 합리적 기대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자칫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넷째,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또한 한미FTA 투자자-정부 제소권(ISD)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서비스, 투자, 지재권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ISD조항은 위헌논란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정부측이 불승인하겠다고 하는 제25조 즉 분쟁해결절차는 만에 하나 정부측이 이를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한미FTA ISD와 비교해 보면 그 효력이 터무니 없이 미달된다.

먼저 문화다양성협약 제25조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는 첫째, WTO분쟁해결 절차에 규정된 강제관할권과 비교해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없이는 절차 개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둘째, 한미FTA의 ISD가 투자자 즉 기업의 제소권 조차 인정하는 데 비해, 문화다양성

협약은 오직 국가간의 합의하에서만 알선, 중개, 중재, 제소등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어떤 형태로든 ‘문화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시청각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지적 재산권등 관련 분야 모두가 ISD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문화다양성은 그래서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설사 문화다양성협약에 근거해 한국정부가 정책주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할 리 없는 미국에 대해 과연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이다. 한마디로 승인해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판에 아예 승인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화다양성협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그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 든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협약이다. 그리고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흔히 오해하듯이 영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기초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상품, 문화산업, 문화서비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매체 일반에 관계한다. 이 모든 것과 관련 문화다양성 협약은 국가의 주권을 승인하고, 경제체제에 의한 문화분야의 ‘식민화’를 저지할 한계도 있지만 나름대로 유용한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또 이를 위한 새로운 자율적 정책공간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행위 주체가 되는 국가가 활용할 의지가 없다면 사실 무의미하다.

2. 문화다양성협약과 시민사회

현재로서 문화다양성협약의 본래 의미를 지켜내는 방법은 한국 시민사회의 능동적 개입과 적극적인 감시이외엔 없다. 다시 말해 문화다양성협약이 ‘시장의 독재’에 맞서 문화영역에서 의미있는 무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인식제고와 실천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은 협약 본문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근거들을 담은 상당히 진취적인 협약이라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협약 제11조는 '당사국은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협약 12조 (c)항에서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협약의 발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예컨대 국제 문화전문가단체(CCD)가 협약의 초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시민사회는 협약의 채택, 발표, 이행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했다는 의미는 협약 제11조에 명시된 것처럼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은 다른 무엇보다 협정문에 명시된 협약국의 임무의 범위와 관련이 된다. 문화다양성협약의 조문화 과정에 직접 참여해온 캐나다 라발 대학 이반 베르니에 교수는 이를 다음 12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 1) 개인과 사회 집단이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국 영토 내에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a)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표현을 창조, 생산, 보급, 유통하고 이용. (b) 자국 영토 내 및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함. (제7조)
- 2)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취한 조치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매 4년마다 유네스코에 보고

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 공유를 책임지는 연락 포인트를 지정해야 한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해야 한다. (제9조)

- 3) 특히, 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타 당사국 및 국제, 지역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제10조)
- 4)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1조)
- 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양자간,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 6) 특히 개도국의 문화 산업 강화를 통한 역동적인 문화 부문의 양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성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정보, 경험, 전문 지식의 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 문화 다양성 기금의 설립을 통해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제14조)
- 7)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역량을 강화하는 개발도상국과 협력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간 파트너십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제15조)
- 8)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 법적 틀 안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술가, 문화 전문가, 문화 종사자들에게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6조)
- 9) 서로, 특히 제8조에서 언급한 상황에 처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에 협조해야 한다.(소멸의 위기,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거나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는 수단) (제17조)

- 1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범사례에 관한 자료 수집과 통계와 관련하여 정보 교류와 전문성 공유에 동의한다. (제19조 1항)
- 11)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적절한 재정 지원 개발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4항, 18조 7항)
- 12) 다른 국제적 포럼에서 이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본 목적을 위해 당사국들은 이런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면서 서로 적절히 협의해야 한다. (제21조)

물론 이러한 문화다양성협약 가입국의 의무는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라기보다, 다분히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달성되어야 할 규범적 목표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개입은 그러므로 단순히 법적인 측면과 동시에 정치적 측면을 함께 가진다. 그리고 그 범위는 지역적, 일국적, 초국적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과 그 이후의 실제 활동을 시야에 넣고 볼 때,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VI 맺는 말_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위한 제언

1. 현재 한국은 미국, EU 곧 신자유주의 통상거브넨스에 기초한 양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이다. 양대 협정 모두 현재 발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의 효과를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남미등지에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일 때, 다분히 예외적으로 발전국가(developmentalist state)주도형 압축성장의 성공사례로 꼽혔던 한국은 이제 양대 경제권의 시장 쟁탈전의 전장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FTA가 결국은 민중의 이익을 담보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라 할 때, 한국계 초국적 자본에게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경쟁격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림을 의미할 수도 있다.
2.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조에게 통상이슈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새로운, 민주적이며 대안적인 통상거브넨스의 창출 없이, 탈신자유주의는 현재로선 무망하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오늘날 통상은 그저 상품수출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것은 “관세와 쿼터”의 문제만도 아닌 국내법을 바꾸는 문제 곧 국내의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세계화의 결과, 이미 한국경제와 사회가 그 치명적인 영향권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것이 하루 이틀된 이야기가 아니다.
3. 현대 세계통상질서는 자유무역, 보호무역, 공정무역의 세 가지 패러다임 내지 접근방법이 서로 상충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물론 자유무역의 압도적 우위 속

에 각종 보이지 않는 보호주의가 이를 보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하고 있고 그 틈새를 공정무역론이 비집고 있는 형국이다. 아마 앞으로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서로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초기에 설정된 방향에서 대 전환을 이룬 공정무역론은 그 대세에 있어 이미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포섭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향후의 전개방향은 열려 있다고 하겠다.

4. 이글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다양한 대안 무역 논의를 추적해 왔다. 먼저 미국의 시민사회와 노조가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신통상법(TRADE 법안)의 시도이다. 기존 부시의 공격적 일방주의와 NAFTA형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총괄한 것이라 할 만하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WTO체제를 비롯 세계 통상질서는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해 진다. 하지만 현재 150명 정도의 지지서명을 받은 채 의회에서 계류중인 이 법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며칠 전인 11월 2일 미 중간선거에서 이 법안을 지지한 공정무역론자(fair trader)가운데 상당수가 낙선했다는 보도가 있다.

5. 미국에 이어 공정무역에 있어 또 하나의 보루가 되고 있는 EU의 경우 2006년 '글로벌 유럽' 전략이 제출된 이래 통상 및 투자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품분야보다는 비관세영역에서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EU의 향후 통상거브넌스도 상당한 관심거리이다. 그 첫 번째 모델케이스인 한-EU FTA 협정문을 근거로 판단해 보건대 글로벌 유럽 전략에서 설정한 핵심전략이었던 신모델 FTA는 예상대로 대단히 공격적이고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이다. 초국적 자본의 지배전략으로서 글로벌 유럽에 맞선 '사회적 유럽' 전략의 실현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ALBA-TCP는 새로운 유형의 통상거브넌스가 작동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통상이 그저 자본논리에 기초한 이윤극대화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대중의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사례는 국가권력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베네주엘라의 석유자원을 국가권력이 어떻게 장악하고 활용하는 지에 따라 역내 질서 재편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 지점이 ALBA-TCP 모델의 취약성이기도 하다. 베네주엘라 석유자원을 세계시장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때만 가능했던 여러 민중지향적 여러 프로젝트들이 역으로 석유의 세계시장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7. 헐리우드의 문화제국주의에 맞선 문화예외주의와 여기서 한 걸음 더 진화한 문화다양성 논리에 기반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성공은 바람직한 남북간 곧 유럽과 3세계간 국제협력의 사례가 된다. 기본적으로 문화주권을 통해 미국에 의한 세계 문화생태계 독식을 견제하고 방어하자는 것이 그 핵심 이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약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배제된 협약이니 만큼 그 집행력과 파급력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문화다양성협약이 배태된 그 초기적 형태인 문화예외주의는 이제 다른 영역, 노동, 농업, 필수공공서비스, 지적권등으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한국과 나아가 동아시아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대안적 통상거브넌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형태의 공정무역역에서 한 걸음 진화된 새로운 대안 무역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잠정적으로 이를 '정의로운 무역(Just Trade)' 이라고 불러두자.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입전략

이 필요하다고 본다.

- (1) 현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잘해야 '틈새' 시장에 불과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기 위한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미있는 충격을 가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보이고 있지 않는 한국의 공정무역에 대해 비판적 개입이 필요하다.²⁴⁾ 이 과정에서 배럿 브라운등 공정무역 1세대론자들이 지녔던 비판적 관점들을 재차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⁵⁾
- (2) 기존의 통상협정안에 대한 대안적, 진보적 통상협정모델을 합의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개입이 필요하다. 민중의 이익을 협정문에 담아내고 여기에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는 작업은 언제나 기본이 되어야 한다.
- (3) 한미FTA, 한EU FTA등 신자유주의 FTA에 대한 항의와 저지등의 실천적 개입은 계속되어야 한다.
- (4)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국내적 차원으로 예컨대 '통상절차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권자는 말할 것도 없이 국회의 민주적 통제로부터도 완전히 분리 자립화된 통상관료들의 월권적, '독재적' 행태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입법적, 제도적 개입이라고 하자.
- (5) 양극화, 일자리 해외유출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통상협정으로 인한 폐해의 사회 의제화 를 통한 사회적 개입이다.
- (6)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정치적 개입이다. 각종 선거에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FTA에 반대하는 세력을 조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이 필요하다.
- (7) 동아시아에서의 대안적 지역주의에 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하지만 지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연대적 개입이다. 중남미와는 달리 동아시아 공간은 상당한 문화적 동질성과 친화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관계를 제외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함께 나눌 공동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와 노조의 대안무역적 동아시아구

24) <표5> 국내 공정무역현황

업체명	매출액(연도)	주요물품	주요수입국	유통방식	비고	시작
아름다운커피	7억 6천(08)	커피	네팔/에루	인터넷/ 아름다운가게	30억 목표(09), 매년 200~ 300%씩 성장	2006년
두레생협	3억 4천(07)	설탕, 올리브유	필리핀, 팔레스타인		최초 사업 원재료(팜유나 기타 유지, 사료, 향료등) 대상확대	2004년
한국MCA	2억(07)	커피	동티모르	카페 '티모르'		2005년
COOP생협	4억 5천 2004년	커피, 초콜릿, 마스코바도 설탕, 인스턴트 커피	동티모르, 콜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	인터넷/ 생협매장		2007년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7천만 이하	의류, 패션 소품, 도자기, 커튼, 차, 아로마용품 등 120여종	네팔/라오스 /인도	인터넷/ '그루 매장'		2007년
공정무역연합	400만(축구공, 초콜릿 (08년도 3천만 수입)	축구공/ 초콜릿	파키스탄/ 스위스	인터넷	FLO 인증제품	2007년
현대백화점	15-20만(1일)	씨리얼, 딸기잼, 설탕, 코코아, 씨리얼바, 파스타, 커피, 초콜릿 등 총 27종	본점/압구정	FLO(Fairtrade)	label organization ; 국제 공정무역상표 인증기관가 인증한 '공정무역상품'	2008년

25) "평행적(parallel) 통상시스템과 초대형 기업이 장악한 지금과 같은 세계무역의 여러 기구와 나란히 커가는 그러한 시스템내에서의 대안적 통상 네트워크" 본 논문의 위 4쪽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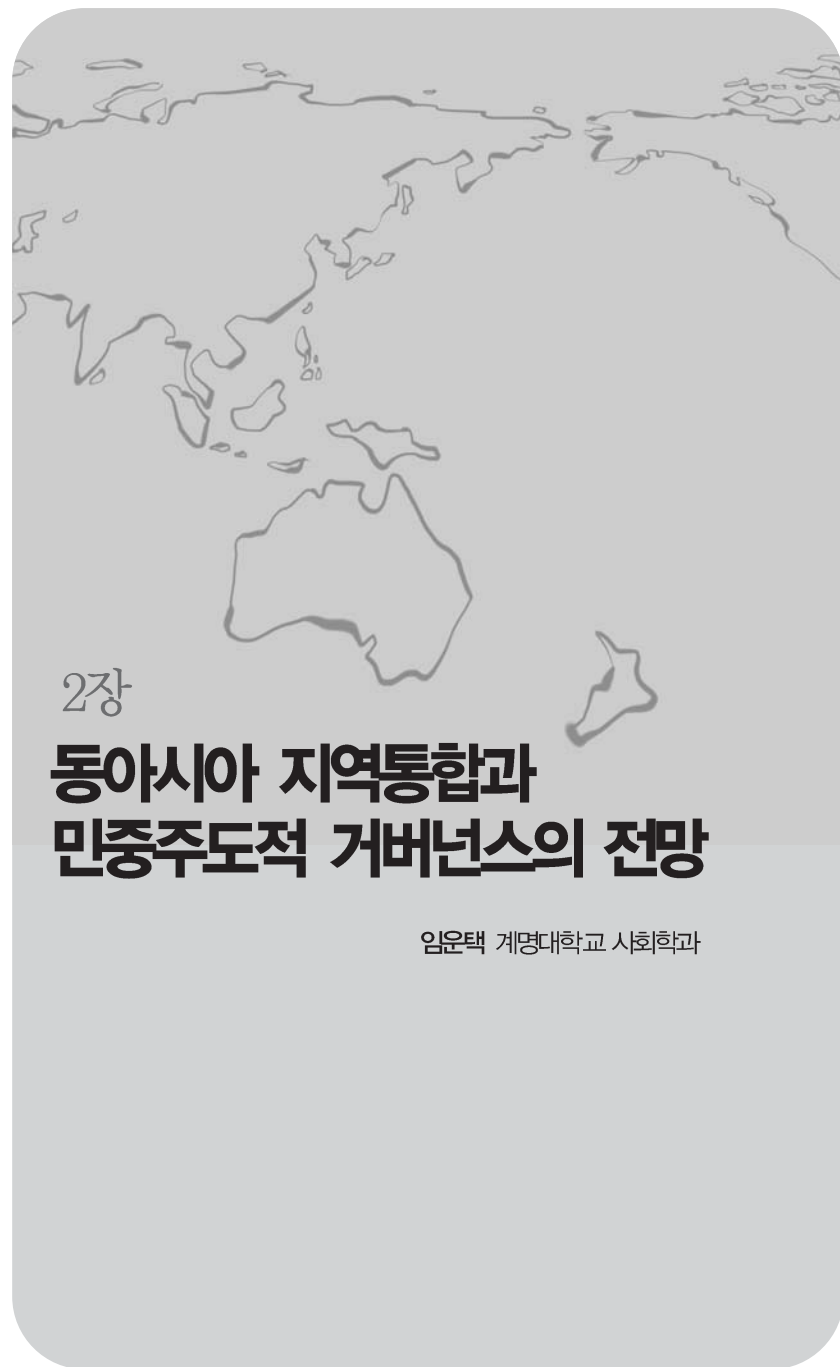
상은 EU나 중남미와는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이 판이하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동아시아에서의 적극적 국제연대를 회피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제는 비국가적 대안무역 네트워크 구상을 적어도 공론에 회부할 시점이 되었다는 말이다.

(8) 기업의 투자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전략적 확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조와 시민사회는 정부/기업의 FTA전략에 대해 첫째 ‘예외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문화부문이 이 경우다. 즉 FTA에서 문화를 예외로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한EU FTA가 이 경우다. 유럽의 강력한 문화다양성 운동의 결과 한EU FTA에는 시청각부문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양자간 문화의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이외는 좀 변형된 것으로 노동 및 환경부문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부문보호주의’를 들 수 있다. NAFTA에도 한미FTA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적어도 NAFTA를 예로 놓고 볼 때 그리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셋째, 강력한 반대와 전면저지의 경로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이다. 넷째, 이 글에서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본 대안무역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마지막에 언급한 이 대안의 실현가능성은 고도로 정치적인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그 대원칙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기로 한다. 첫째, 공공성이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의해 국가의 공공영역은 부단히 형해화되고 주변화되어 왔다. 그 결과 민중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질 역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환경등과 같은 필수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무역의 과제가 된다. 통상이 공공서비스의 질제고의 지렛대로 작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성의 원칙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FTA를 통해 어느 집단이 피해본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이력 저력 세금지원을 통해 넘어가자

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은연중에 확산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게되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공정성이야말로 이른바 ‘대내협상’의 확고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은 통상협정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익의 균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부문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다양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문화다양성협정에서 보듯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수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통상협정의 경우에도 이 원칙은 경제, 생활, 욕구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FTA의 경우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넷째, 지속가능성의 원칙이다. 미래세대의 대한 배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자원의 최대 고갈을 지향하는 지금과 같은 생산방식과 노동방식 나아가 통상협정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자본자유화를 지향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FTA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장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민중주도적 거버넌스의 전망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I 서론_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고유성

1997/98년의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는 지역주의를 거대한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 제도화된 국가간 협력의 사례로 별로 없고, 유럽이나 남미에 비해 집단적 정체성이 그리 강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지역경제통합모델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쌍무협정이든, 다자간 협정이든 다양한 형태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FTA의 원형)이 생겨나 심지어 일종의 스파게티접시 효과(spaghetti bowl effect)²⁶을 만들어내었다. 아시아의 각 정부들은 ASEAN + 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등 새로운 지역체제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와 같이 최초로 역내 국가 간의 재정협력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East Asian Nations: ASEAN)보다 확장된 지역체제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1967년에 설립된 ASEAN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동안보와 자주 독립노선을 견지하려는 구지역주의모델이라면, 동아시아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지역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시장의 확장과 그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동아시아 내에서 지역주의는 안보라는 특수한 요인을 제외하

26)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바그와티(Bhagwati)교수는 한 국가가 여러 국가와 동시에 FTA를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의 활용률이 저하될 수 있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면 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든, 그에 대한 대항의 입장에서든 그 정체성이 유럽과 남미와 같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약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주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일정 정도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대한 불분명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는 각종 FTA 협상을 위한 간결한 공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매우 상이한 경제규모, 경제적 발전수준, 거버넌스 체제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FTA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사실은 기존의 다른 세계지역과는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고찰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제관계론이나 통상에 관한 익숙한 문헌에 따르면 통상협정은 거래비용의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이해나 기업의 시장접근, 혹은 기업의 해외 경쟁자들이 제3세계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향유하고 있을 때 자신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필요로 할 때 추동된다고 한다.

반면에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즉, 각종 FTA/PTA)가 시장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시장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요인과 계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수출에 대한 이해관계를 지닌 동아시아의 주요국가들(특히 한중일)이 FTA를 통해 얻는 실익이 여타 세계지역과의 관계에 비해 본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며, 다국적 기업의 경영에 대한 장애물은 이미 동아시아 위기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신지역주의는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보다는 정치적 이해(실질적

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의해 주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²⁷⁾

아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러한 발전이 지니는 의미와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II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현황

아세안+3과 통화지역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1. ASEAN + 3

1) 출범배경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역내 협력을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을 시발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ASEAN이나 APEC 등 지역 경제체제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현실이 ASEAN을 넘어선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냉전체제 종결, 동아시아 국가 및 자본간 거래 활성화,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 등 세계적 환경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의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권의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으로 인해 동아시아 경제의 동질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고도성장으

27) 이는 국내의 엘리트 관료집단들이 정상적인 대차대조표를 무시하고 기존의 한-미 FTA나 한-EU FTA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와도 큰 틀에서 일맥상통한다.

로 인한 역내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EU에 이어 NAFTA 출범 등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필요성을 높인 것이다. 반면에 APEC은 무역관계에서 “개방적 부문주의”(open sectoralism)를 주장하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그 매력에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Aggarwal and Ravenhill, 2001).

이러한 배경 하에 ‘아세안+3’이 1997년에 출범하였다. ‘아세안+3’은 그 아세안 체제에 한 중 일 동북아 3국이 참여하는 구조이다. 즉, 아세안이 중심이 된 협력체이다.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출범은 동아시아 지역의 일천한 다자적 협력 경험에서 비롯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포함하는 다자적 경제협력 체제는 아세안이 유일하였다. 1993년 APEC 정상회의가 출범하기는 하였으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역적 정체성이 모호하고, 이질적 경제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적 의도에서 연유한 인위적인 협의체로서 성격이 강하다. 결국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동아시아 협력체 형성에 대한 논의는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 말레이시아 총리는 동아시아 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을 제안하였고, 아세안이 동아시아 경제 협의체(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 설립 추진을 구체화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이러한 초기의 시도는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산되었다(문준조 외, 2006:25).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 지역체제 보다는 미국이 주도하고 개입할 수 있는 APEC를 미국과 일본 등이 선호하였기 때문이다(권을 외, 2005:77-79).

1996년 방콕에서 열린 최초의 아셈 정상회의는 EAEC가 아세안+3으로 변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아셈 아시아 대표국으로 동북아시아 3국(한, 중, 일)과 아세안 회원국이 참가하였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셈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고위 관료 회담 및 경제 및 외무 장관 회담을 각각 1996년과 1997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1997년 아세안 정상회담에 동북아 3국이 초청되며 아세안+3이 태동하였다. 그리고 1999년 제3차 아세안+3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의 다각적인 협력을 위해 아세안+3 체제를 정례화 하였다.

2) ASEAN + 3의 발전과정

제1차 정상회담 이래 아세안+3은 짧은 기간에 안정화되며 포괄적인 지역 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아세안의 주도하에 대한 동북아 3국의 적극성이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단기금융자본을 규제할 국제 금융체제의 개혁과 동아시아 지역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해 ①경제재건을 위한 지원 강화(신미야자와 구상), ②자유무역지대 건설, ③금융통화협력 강화를 위한 기금 설치(AMF 구상), ④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간 협정(통화 스와프 협정), ⑤엔의 국제화(동아시아 기축 통화로서 엔화의 사용) 등에 적극성을 보였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을 제안하여 동아시아지역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으로 이어졌다. EASG는 EAVG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였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EAVG의 방안을 채택하며 ASEAN+3의 목표와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응하여 주변국과 정치안보 및 경제적인 관계 강화의 차원에서 아세안+3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최초로 아세안과 지역 무역협정(RTA)의 체결을 제안하고 아세안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 경쟁적인 지역무역협정 추진의 붐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²⁸⁾

아세안+3는 동아시아 현실적 외교관계를 반영하여 중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세안이 아세안+3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3 정상회담은 아세안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개최된다. 한편 1999년 이후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다. 동북아 정상은 초기에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최근에는 북핵문제 등 정치문제를 비롯한 역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권을 외, 2005: 85).

3) ASEAN + 3의 협력분야

1999년 제3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은 아세안+3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 있어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세안+3은 ‘동아시아의 상호 이해, 신뢰, 친선관계,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대화를 증진하고 공동의 노력을 심화’하는 목적 하에, 경제 사회 및 정치 분야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아세안+3이 경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안보 및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의 지역협력을 위한 협의체로서 위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아세안+3이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게 된 배경에는 아세안+3이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는 아세안의 확장체제라는 성격에서 연유한다. 공동성명은 경제 및 사회적 협력으로 경제, 통화 및 금융, 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 과학 및 기술 발전, 문화 및 정보, 발전 등의 협력을 합의하였고, 정치 및 기타 협력으로 정치안보 및 국제

28) WTO 규정에 따라 지역무역협정(RTA)을 크게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 개도국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개도국협정은 1979년 기능조항(enabling clause)에 따라 개도국이 포함된 지역무역협정의 관세철폐의 포괄범위 및 기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협정이다.

법죄와 같은 초국가적 의제를 협력분야로 합의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은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및 연구그룹(EASG)의 보고를 통해 협력의 방향과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표 5)참조).

〈표 5〉 아세안+3의 협력 분야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1999)

분 야	소 분 야	내 용
경제 및 사회	경제협력	무역, 투자, 기술 이전의 가속화: IT, 전자상거래의 기술 협력 장려: 산업 및 농업 협력 증진: 중소기업 강화: 관광 증진: 메콩강 삼각주를 포함한 성장지역 개발에 적극적 참여 장려: 동아시아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개혁의 지속 및 협력의 강화
	통화금융협력	거시경제 위기 관리: 기업재배구조 개선: 자본 흐름 감시: 은행 및 금융 제도 강화: 국제 금융 제도 개혁 자금 및 자원 제도 증진
	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개발 기금 설립과 아세안 사회안전망 실천계획 아세안을 통한 아세안 인적자원개발 계획(ASEAN HRD Initiative) 이행의 협력 증진
	과학 및 기술 발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량축적 증진
	문화 및 정보	세대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 표현: 민족간 교류 증진 문화적 이해, 신뢰 및 평화 증진
	발전협력	하노이 실천계획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 지원
정치 및 기타	정치안보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속적 대화 조정 및 협력
	초국가적 의제	동아시아의 초국가적 의제의 해결에 있어 협력 증진

자료: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28 November 1999
아세안 사무국, <http://www.aseansec.org/5469.htm>

〈표6〉 EASG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

분야	단기조치(17)	중·장기조치(5)	추기연구조치(4)
경 제 금 융 (12)	• 최빈개도국 특혜조치 • FDI 확대 투자환경 조성 • 동아시아 투자 정보 네트워크 설립 • 소성장기대 자원·인프라 개발, 금융지원 및 민간 참여 장려 • 인프라 IT, 인적자원개발, ASEAN 경제통합 지원 및 협력 제공 •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개발 • 통신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access 확대 위한 IT 공동개발	•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대 설립(장기) • 중소기업의 투자 증진(중기) •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장기)	• 역내금융기구 설립 • 역내 환율 공조 체제 추진
정 치 안 보 (2)	• 동아시아 think-tanks 네트워크 구축 • 해적·마약·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안보문제 위한 협력강화		
사 회 환 경 (6)	•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시행 • 빈곤퇴치 프로그램 수립 • 기초의료 서비스 제공 공조	• 역내 해양 환경협력 증진(장기)	• 에너지 정책, 전략 및 이행 계획 수립 • 정책지문·공조위한 NGO 외의 협력
문 화 정체성 (3)	•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 위한 문화, 교육기관과 공동작업 • 예술, 문화재, 문화 유산 보존 네트워크 및 전문가 교류 증진 • 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		
제 도 (3)	• 동아시아 기업 협의회 설립 • 동아시아 포럼 설립	•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장기)	

자료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3.08.07)에서 재인용

EASG 보고서 승인 이후 단기과제에 관한 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어 형식적으로나마 대부분 이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포럼 설립,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접근 확대 위한 IT 공동개발, 기초의료서비스 제공 공조,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 위한 문화, 교육기관과 공동작업 등을 주도하여 왔다. 일본은 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 최빈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제공 및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 부여, 투자 확대 투자환경 조성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think-tanks 네트워크 구축, 해적·마약·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3.08.07). 한편, EASG의 중장기 9개 과제(표6 참조)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설립,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 동아시아투자기금(AMF) 설립, 동아시아정상회의(EAS)설립 등도 상이한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EASG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AMF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지역주의 논의일 것이다.

2. 금융협력과 통화 지역주의

아세안+3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다른 분야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를 일찍부터 내고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 금융협력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아세안+3 강화하는 계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발전은 단일무역 체제(EEC)로 발전한 후, 금융통합으로 발전한 유럽의 경험과는 차이를 보이지만(KIEP, 2002: 95), 큰 틀에서 볼 때 금융자본과 같은 특수한 시장체력이 지역통합의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아시아에서 금융협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이유는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국

가 간 이해 및 각 국가 간 계급적 이해를 초월하여 제2의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동아시아의 대처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에 진행된 금융협력은 크게 금융위기 관리와 채권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이후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체제 구축(모니터링 실무그룹 구성 등)과 정책공조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 감시 및 공조 능력의 배양 등으로 의제가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동아시아 공동통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등 통화창설에 대한 논의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공통 통화의 창설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지만, EU와 같은 통화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경제의 통화종속성과 시장에 대한 금융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지지하는 다수의 시장론자들이 언급하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양자간 통화 스왑협정 체결이다. 양자간 통화 스왑협정은 동아시아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협정에서 약정한 금액을 위기에 처한 국가의 화폐와 교환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는 장치이다. 외환위기 직후 일본 주도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이 제안되었고 동아시아 국가의 광범위한 호응이 있었으나, 미국과 미국의 의중을 반영하는 IMF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동아시아 국가간 양자간 통화 스왑협정은 이에 대한 차선택으로 추진된 것이다. 2000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 통화스왑협정(치앙마이 이니셔티브)²⁹⁾은 2006년 5월 까지 아세안+3 역내 국가들 사이에 총 16건, 750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이는 과거 아세안 5개국 사이에 존재하던 아세안 스왑협정(ASA)이 아세안 10개국으로 확대 증대한 것과, 한 중 일이 아세안 각국과 개별적인 스왑협정을 체결한 결과이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주요성과’,

2006.5.4).

양자간 스왑협정으로 역내 금융협력의 한 단계 발전되었으나, 실제 금융위기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총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총액이 충분하지 못하고, 약정금액의 20%만 IMF 지원과 연계 없이 지원할 수 있게 하여 IMF를 보완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다수 ASEAN 후발가맹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의 경우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스왑협정 이행을 위해 개별적인 협정체결국과 다수의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29) 치앙마이합의는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역내자금지원제도로, 위기 발생 시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회원국간에 자금을 지원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 개별국가 차원에서 급격한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현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아시아 역내자원 메커니즘 강화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치앙마이에서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한중일 3국과 ASEAN 회원국은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치앙마이합의(CMI)라고 한다. CMI 통화스왑계약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MF 지원프로그램에 더하여 자국의 통화를 대가로 역내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미달러화를 제공받은 후 계약만기(1회 90일로 7회까지 만기연장 가능)에 동 금액의 미달러화를 상환하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는 거래이다. 이후 ASEAN+3 국가간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체결 및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CMI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수지지원 또는 단기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스왑 형태로 단기자금을 지원
- IMF 등 기존의 국제 자금지원제도를 보완
- 지원요청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국 중 조정국(Coordinator)이 지명되어 협의과정을 조정
- 자금지원은 지원요청국이 IMF 프로그램에 합의했거나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지원국이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최대약정규모의 10%까지는 IMF 비연계로 지원이 가능
- 계약유효기간은 3년
- 스왑방식: 상호지원(two-way) 또는 일방지원(one-way)
- 스왑통화: 요청국통화/미달러화
- 인출자금의 만기는 3개월이며, 최대 7회까지 연장 가능

III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과 문제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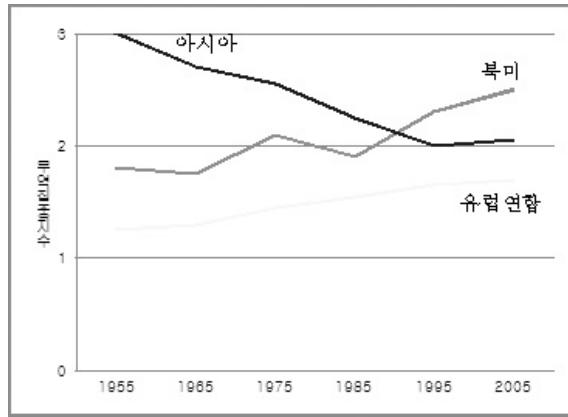
세계 곳곳에서 FTA가 체결되고 확산되기까지는 이전에 상당히 많은 알라바이가 동원된다. 대체로 FTA가 경제적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보는 기능주의적 입장에 서있는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연구 집단’은 FTA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통해 FTA가 참가자들 모두의 윈-윈 게임(win-win game)임을 입증해준다. 아세안 + 3, 한·중·일 FTA, 나아가서 이 모두를 합친 동아시아 FTA(EAFTA)가 됐건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FTA가 가져다주는 후생효과(welfare effect)이며, 이에 근거하여 FTA에 참여한 정부의 역할 - 수요적 측면이든, 공급적 측면이든 - 을 규정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해 역내에서 경제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FTA를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는 상호경쟁적인 국내 수출업자의 수요에 조응한다는 명분아래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현실은 기대치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FTA를 추진하거나 혹은 반대함에 있어서 기업이 별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제와 정치에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즉 사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기본 모델과는 사뭇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경제적 유착관계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확

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제의 유착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지역통합의 추동력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다수의 사례에서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위해서 국가가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경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FTA 교섭과정에서 시장자유화를 지지하는 비국가 행위자의 로비와 영향력은 국가의 보호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쇄되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통합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는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실천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1997/98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가속화된 시장주도적 경제통합이 무역과 FDI(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와 이를 지배하는 정책, 규칙, 기준의 조화를 추구하게끔 하였다고 본다. 그러한 배경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주의의 제도화가 진척되었다면 모르겠거니와 정부간 협력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동아시아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기존의 평가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역주의의 강화를 주장하는 핵심논거인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과연 지난 수년 동안 심화되었을까?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의하면 전세계 총무역 비중으로서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은 NAFTA의 비중을 넘어섰으며, EU의 그것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Asian Development Bank, 2008; Kawai and Wignaraja 2007: 2). 그러나 실제로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하였는지의 여부는 ‘지역’과 ‘상호의존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예컨대, 지역을 ASEAN +3(한중일)로 정의할 경우, ASEAN 10개국 지역내 무역의 비중

〈그림 1〉 역내 무역집중지수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09, Figure 2.6 p. 41), calculated from IMF Directions of Trade data

은 1995년 37.6%에서 2006년에 겨우 38.3%로 증가했을 뿐이다(Kawai and Wignaraja 2008: table 1참조). 그러나 생산네트워크와 이와 연계된 동아시아 내 무역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재조정되고 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여타 동아시아경제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동아시아시장에 대한 중국의 수출 종속성은 1996년 53%에서 2007년 3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Ravenhill, 2010: 182).³⁰⁾

만약 세계적 규모의 교역을 관찰함에 있어서 변화하는 경제의 비중에 맞춰 각국의 경제를 바라보지 않고 각국의 경제가 특수한 파트너와의 무역량에만 기초한 다른 경제와의 무역을 추구하는 것(소위 비교우위론)에만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낸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Lincoln, 2004). 일례로 아시아

30) 홍콩을 제외한다면, 그 비중은 단지 20.7%에 불과하다.

경제는 전체 GDP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 평균보다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무역집중지수(trade intensity index)는 무역의 순수한 비중을 국제통상에서 지역의 비중변화에 맞춰 조정한다. 무역집중지수에 근거해서 지역별 무역비중을 다시 살펴보면(그림 1), 아시아의 역내 무역집중도는 1955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995년 이후에야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EU와 북미의 등가지수는 동시기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아시아 경제의 수출을 위한 동아시아의 지리구(geographic regions)³¹⁾ 내에서 시장의 중요성은 지역을 관통하는 부품재의 교역이 이중 계산되는 모호한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과장되고 있다. 2006년에 동아시아 수출의 절반가량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시장으로 직접 운송되었지만, 수출 품목에서 부품 및 중간재를 포함시키면 총수출가치의 2/3가 이 지역에 해당된다(Asian Development Bank, 2009: 71). 실질적인 이중계산은 중계무역지(entrepôts)로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역할(양국 모두 수출이 GDP 대비 200%의 초과비율을 지님)을 간과한데서 발생하였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보면 비록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는 있더라도 그것이 정부간 협력의 필요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지난 수년 동안 자유무역지대와 관세환급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수출을 위해 제품을 조립하는데 활용하는 부품을 무관세로 도입할 수 있도록 무역장벽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의 결과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생산 네트

31)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원인을 추구함에 있어 자연적 기초와 인문사회현상의 결합형태에 따라 크고 넓은 지역을 여러 개의 작은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지형구(區)를 기준으로 지리구를 구분하는데, 기후구, 농업지역구, 방언지리구, 시장권, 교통권, 문화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공통인자를 추출하여 구분한다.

워크가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전자제품이 교역 단일품목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큰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WTO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³²⁾에 서명하였기 때문이지, 국가간의 협력이 생산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입장에 반해 한편에서는 최근의 FTA의 대상은 관세협상을 넘어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투자 등과 같은 'WTO Plus' 이슈를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맺어진 FTA 협약 중에 이러한 이슈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현황을 보면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해외직접투자(FDI)의 가장 큰 자원을 제공하는 일본의 경우,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3년 동안 동아시아에 대한 FDI 규모는 평균적으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전체의 40%에 달하였으나, 2005-2007년 사이에는 평균 29% 미만이었다(JETRO, 2008). 동북아시아에서 역내 FDI의 규모 또한 매우 작다(Hew et al., 2007). 동아시아국가들이 보유한 총자산 점유율로서 역내의 포트폴리오 자산 보유는 2006년에 전체 총액의 8% 미만으로, 이는 미국으로부터 동아시아로 유입된 포트폴리오 자산규모 37%와 비교해볼 때 크게 차이가 난다(Kim and Lee, 2008: table 5).

동아시아에서 경제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증가하는 거래비용의 문제가 FTA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은 크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FTA협약은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국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실제로 그

런 일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해서 몇몇 동아시아 경제국가의 핵심 수출시장의 지위로까지 부상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중국과 어떤 형태의 FTA도 회피해왔다. 한국정부도 중국이 원하는 방식의 FTA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국중 대만만이 유일하게 지난 2010년 6월에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EA)을 맺었다. ASEAN은 중국과 2004년에 상품무역협정을, 2007년에 서비스협정을 맺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동연구 수준을 넘어 광범위한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FTA협정(즉, 한중일)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수의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흥미롭게도 동아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FTA를 동아시아 지리구 외부에 있는 국가들과 협약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 하고 있다. 2009년 초반까지 완결된 108개의 특혜무역협정(PTA) 중에 86개는 아시아 외부의 국가들과 맺은 것이었다(Asian Development Bank, 2009: 27).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함으로써 역내 FTA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무리이다. 통상 전문가들의 예상과 희망과는 달리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교역국가들과의 협상에 집중하였다. 일례로 한국의 FTA협약을 통한 수출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한-미, 한-EU FTA가 발효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은 누락된 수치임). 일본은 지역공동체로서는 유일하게 ASEAN과 FTA협약을 맺었으며, ASEAN 일부국가들, 멕시코 등과는 개별적으로 FTA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과 FTA협약을 맺은 국가들이 일본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Solis, 2010). 중국은 일본보다 많은 FTA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중국이 일종의 국내경제협약으로 간주하는 홍콩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FTA교역국은 전체

32)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 무역 기구(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정보 기술(IT) 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으로, WTO 회원국 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전기 통신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AS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부르키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뿐이다.

중국 수출의 9%만을 차지할 뿐이다(Ravenhill and Jiang, 2009).

이 모든 객관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무역 및 금융과 관련된 관습적인 경제지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증대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동한다는 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EU나 FTAA와 같은 지역경제 공동체와 달리 동아시아의 특수성은 오히려 지역주의가 경제/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보다는 급속하게 단일내부시장으로 발전한 NAFTA나 EU의 영향아래 촉발된 점이 더 강하다. 소위 지역주의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을 주장하는 볼드윈(Baldwin, 1993, 2006)은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이해관계가 지역주의를 촉발시켰다고 본다. 이는 경쟁국들이 FTA 협약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자국의 수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정부가 FTA협약을 주도함으로써 평등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는 정치적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국가 엘리트들의 목적의식적인 행위의 산물이다. 물론 이때 자유무역 및 통상정책의 논거를 끌어내는 방식은 미국과는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미약한 정당규율(party discipline)로 인해 경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보다는 의회가 통상정책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체결하는 미국식 정치경제모델의 핵심은 통상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당리당락적 계산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동차산업, 축산업자 등과 같은 로비단체들은 미국회의원들의 당선 및 재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행위 논리는 미국과 사정이 다르다. 동아시아에서 국가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자로 존재해왔으며, 경제정책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연구자들은 동아시아 국가의 성격을 (동북아시아의) '발전주의적' 유형(Amsden, 1989; Wade, 1990; Woo-cumings, 1999) 혹은 (동남아시아의) '지대추구적인 가산제'(Mackie, 1988; MacIntyre, 1991)로 규정하기도

한다. 공통적인 점은 동아시아에서 국가는 대외경제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국내의 이해관계로부터 실질적인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경제정책의 형성 모델이 중위투표권자(median voter)³³⁾의 예상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가설이 권위주의 성격의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셈이다. 국민여론과 무관하게 수출주도 경제에서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국가엘리트들의 공허한 주장은 그러한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제도적 구축을 과장해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 유의미한 제도적 협력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요인이 언급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간 협력(앞서 언급하였듯 역내보다는 동아시아 외부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가 대부분)양태의 대부분은 쌍무적이다. AEAN+3이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착수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ASEAN + 1(한국, 일본의 하나)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역내 협력의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치창마이 이니셔티브도 쌍무적 스왑협약(bilateral swap agreements)의 형태로 기능되고 있다(Amyx, 2008; Grimes, 2006).

둘째, 동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는 EU처럼 단순한 정보교환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협력(경제, 산업, 사회정책 등)을 위한 대화체널을 구축하는데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EU와는 달리 동아시아는 오히려 자국의 정책형성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형태로 FTA를 구축하고 있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에 소극적인 일본이 대표적이며, 통상과 금융정책에 있어서 선택적 FTA를 추구하는 중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33) Black, Downs, Hotelling은 다수결 투표제 아래에서 중간의 선호도를 지닌 중위 투표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 엘리트는 이와는 차별적인 행보를 걷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경제와 대외경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의에서 보호주의적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앞세워 한-미, 한-EU FTA를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FTA는 미국이나 EU와 같은 역외국가들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동아시아 내에서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의의 최고형태인 통화동맹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실익이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FTA를 추진하는 한국의 상황은 두 가지 요인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인 국가관료(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면적 부상하였다)와 자유주의 엘리트들(80년대 유학자율화 이후 미국에서 경제, 경영학을 전공한 이들은 대부분 학계, 언론, 기업연구소에 포진하고 있다)이 한국사회에서 FTA 담론을 국가의 명운으로 포장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결코 시장친화적이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각종 FTA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업보고서(특히 기업을 대표한다는 경총, 전경련의 제대로 된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조차 없는 상황에서 FTA는 사실상 인위적이 구조조정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하나는 실력도 부실한 상태에서 산업을 주주중심의 금융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 대가는 시장의 논리와 무관한 산업구조조정(농업과 일부 제조업)이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일반이 보여준 사회적, 정치적 구조조정이다.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 경험은 보여주듯 금융자본중심의 구조조정은 분배정책을 강조하는 노조와 비판적 시민사회를 해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FTA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FTA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국내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러한 점에서 자명하다.

2. 통화지역주의 프로젝트의 위험성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의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의 가장 높은 수준단계인 통화주의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주의와 달리 통화지역주의(monetary regionalism)는 일반적으로 Bela Balassa(1961, 1987)가 정의한 지역통합 5단계³⁴⁾ 중 4, 5단계를 곧바로 목표로 한다. 통화지역주의는 무역과의 연계를 형식화하지 않고서도 통화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길 원한다. 전통적인 지역통합처럼 통화 지역주의는 공통의 통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국가의 의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위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관련하여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는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능력을 포기하려는 의지는 통화 지역주의의 핵심이다. 그러한 통합과정은 <표 3>의 4단계를 따라 발전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특히 금융자본)이 시장에서 자립성을 획득하는 반면에, 개별 국가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적 주권은 약화되며, 이는 개별 국가의 노동자 및 기층세력에게는 현저한 사회정책적 후퇴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최근 통화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러한 관점이 국력신장의 한 일환으로 이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2009년 이후

34) Balassa는 지역통합이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자유무역지대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 및 통화동맹 5. 정치연합

간간히 들려오는 논의 중의 하나는 국제금융위기의 중요한 타개책이 치앙마이 다자기금에 기초한 아시아 통화기금의 설립이고, 그러한 정치적 공간에서 “우리 나라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치앙마이 다자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해야

〈표〉 통화 지역주의의 핵심요소

	수준1: 지역 유동성 기금	수준2: 지역 통화시스템	수준3: 경제 및 통화연합	수준4: 정치연합
핵심 요소	공공의 지역통화 기금 창출	변동환율폭에 기초한 지역 통화시스템의 도입	교환율의 영구적 고정과 단일통화의 창출	정치연합의 창출 그림에도 국가정치시스템은 존재하고, 대부분의 이슈를 포괄함
정치 수단	지역의 중앙은행을 위한 포럼 구축 (지역통화위원회)	지역통화위원회의 정기적 회합	공동의 정치기구를 창출하고, 지역 중앙은행을 설립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초국가적 기구의 창출
추가적 요소 (위기관리)	사적인 유동성 기금 창출	존재하는 지역 유동성 기금의 범위의 확대		
추가요소 (위기 예방)	벌칙이 동반된 일반 채무상환 연장 옵션 (UDROP)			
	개별국가의 자본통제		자본통제의 단계적 실행	
무역요소		규범과 기준에 의해 지역무역의 촉진	관세동맹	노동의 자유이동
거시경제 정책	통화 및 재정정책의 공동 모니터링, 금융시장의 지역적 감시	통화정책의 공조 및 일치, 특히 채무수준과 관련한 금리정책과 재정 정책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사들조차 이러한 입장을 표방하거나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상식의 세계에 대한 반론은 중요하다.

우선 ASEAN +3의 공간에서 통화동맹(단일통화정책)을 주장하는 논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소위 ‘현실주의자들’의 인식이고, 둘째는 시민사회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에 서이다.

첫 번째 쟁점은 어차피 국제경제질서가 북미, 유럽, 아시아의 삼각지역(triad)으로 재편된 마당에 동아시아경제권의 자립화는 일정 정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진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도 제기되었었다.

상황은 지금과 조금 다르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발하였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 아시아 통화기금 설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이는 김종필씨였다. 국제경제위기를 기회로 동아시아 경제의 실질적 채권자이자 조정권자가 되고자 했던 일본의 숨은 의도와 한일 굴욕회담의 주역인 김종필씨가 또다시 일본의 대리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발로 인해 최소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유아무야되었다. 나아가서 당시 통화기금체제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0년 5월에는 앞서 논의하였듯,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통화스왑형태의 역내 유동성 공급장치로 소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가 구축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근 다시 아시아통화기금 체제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시아통화기금체제를 선호하는 입장의 근거는 동일한 듯싶다. 이러한 시각은 어차피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로 미국세계모니 중심의 세계경제가 전후 냉전질서체제만큼 강건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는 차선택으로 아시아통화기금체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동아시아 통화체제를 지지하는 논자들의 인식도 크게 보아 이러한 범주 속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가 역내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일종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면 통화기금의 설립은 근본적으로 그 운영방식과 목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이는 완전히 다른 경제질서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통화기금의 설립은 EU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서막이다. 타산지석이라고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자. EC에서 EU로의 시장통합과정을 보면 그러한 변화의 선두에는 언제나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난 시장의 확대를 추구하여온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 보험 및 투자회사, 연기금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이 있었다. 간혹 국내에서 EU 통합과정과 관련하여 맥락 없이 암스테르담조약(1997년)의 본문에 삽입된 사회헌장을 들어 EU에 대한 성찬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91년 급속도로 체결된 신자유주의적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유럽시민의 반항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시장통합의 핵은 다름 아닌 유럽통화동맹(EMU)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회지배전략은 그러한 점에서 탁월하다. (신자유주의적)정치가들이 자국내에서 누더기가 된 사회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립서비스를 할 때,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은 신자유주의를 뺏속까지 체화한 유럽중앙은행 및 각국의 중앙은행총재들의 손에서 움직이게 하였다. 형식상 정치적인 독립성을 향유하는 이들은 EMU 실현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3%로 제한하면서 금융자본가들과 자산자본가들의 위험률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개별 정부가 사회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바로 그러한 현실 때문에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를 비롯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유럽의 시민운동세력은 EU국가의 중앙은행(특히 영향력

이 가장 막강했던 당시 독일 중앙은행총재 한스 티트마이어)의 수장들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동아시아도 점차 신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의 연합(금융자본, 다국적 기업, 신자유주의적 지식인들과 같은 엘리트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조정되는 정부)에 의해 현실주의적 선택이라는 미명아래 (물론 EU와 같은 형태로의 발전은 아닐지라도)역내 시장통합 내지는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역내통화기금설립을 주장한다. 과연 그것이 아시아사회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일까? 지금까지 북미나 유럽에서 진행된 경제통합의 경험을 보건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대답이라고 본다. 특히 두 가지 사례 모두 사회통합이나 정치통합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본세력을 위한 경제/시장통합으로만 머무르고 말았으며 그 대가도 엄청났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시민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이미 세계화에 대한 논쟁에서 수없이 지적된 바처럼 정치와 사회에 의해서 다시 시장이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문제는 그 영역이 과거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처럼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국가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묵은 구호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강조하건대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익이 합치된다고 보는 시각은 백번 양보해서 전통적인 사민주의자들의 관점에 동의한다고 해도 냉전시대에서나 타당한 낡은 틀이다. 그것은 냉전시대에 소위 양대 진영이 대립하고 있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으며,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자본주의적 국민국가의 번영은 미국의 헤게모니 우산아래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소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대변되는 반자본주의적 강령도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은 국민국가의 틀 안에 제한된 정치의 공간을 뛰어넘어 시장이 정치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진보시민사회운동도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대안 운동을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 및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논의는 이제 그 논의의 영역을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아시아에서 고삐 풀린 자본의 동력을 규제할 시민사회(아시아)의 연대를 재구성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한 상대방이해하기식의 시민사회의 교류의 틀을 벗어나 범아시아차원의 시민의회의 구성 등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제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국익이 아닌 우리와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강조하건대 세계화시대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영역은 결코 분리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보적 지식인의 과제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새롭게 창조하고,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IV 시장통합에 대한 대안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과제

1. 다른 지역주의 모델이 주는 시사점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현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주의가 공식적으로는 국가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의의 의사결정구조,

거버넌스, 시민사회 개입의 기회 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주의 중 의 가장 선행적이지 구조화된 사례로서 유럽(EU)과 대안적 지역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남미(ALBA) 두 가지 모델을 지역주의의 구조, 거버넌스 메커니즘, 의사결정과정, 사회기층을 위한 프로그램, 민중/시민사회개입의 기회 등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검토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 발전과정

EU는 1949년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과 1950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SEC)의 설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후자의 설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위해 필요한 산업자원을 조달하는 시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57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은 2개의 또 다른 공동체를 탄생시켰는데, 그 하나는 이후 관세동맹으로 발전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이고, 다른 하나는 핵에너지 협력을 위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AEC)이다. 두 개의 공동체는 1967년 EEC로 합병되었으며,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거쳐 1993년에는 EU로 발전하였다.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발전된 지역주의 모델로 간주된다. EU는 경제의 중추신경으로서 단일지역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의 통상정책, 공동의 농업·어업정책, 회원국들 내의 지역발전정책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다. EU는 지난 50년 동안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와 오늘날과 같이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상에서 공동의 입장

을 채택하고, 추진하는 지역거버넌스의 독특한 시스템, 구조 및 제도를 발전시켰다. EU는 평화와 안보라는 출발단계에서의 관심영역을 뛰어넘어 역내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으로서 경제 및 통화동맹으로 발전해왔다.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은 시장통합을 우선순위로 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영향아래 다음과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었다:

- 국경이 없는 자유, 안보, 정의의 영역
- 경쟁이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내부시장
- 균형적 경제성장과 가격 안정화, 완전고용과 사회발전,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을 추구하는 고도의 경쟁적 사회시장경제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
- 과학과 기술의 발전
- 사회적 배제와 차별철폐, 사회정의와 보호의 촉진, 성평등, 세대 간 연대, 이동권의 보호
-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응집력 추진과 회원국 간의 연대
- 유럽 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

회원국들 내에서 국경 없는 완전한 지역통합을 통해 시장의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무역과 시장에서 완전한 개방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지역주의는 세계의 다수 지역주의가 추구하는 매우 관습적인 모델로 간주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개괄된 EU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EU내에서 인력, 재화,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소위 '4개의 자유')과 국적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

- 회원국의 국가별 정체성과 기본적인 정치적, 헌정구조를 존중할 의무
- 회원국 법률에 대한 EU법의 우선성
- 국제협약을 체결할 권리
- EU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자위 부여(조약 1-7조)

실천적 관점에서 이러한 원칙의 조직화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보다 실행되기가 훨씬 어렵다. 국가법에 우선하는 EU법은 특수한 영역과 관할권에 따라 개별국가가 EU의 결정사항을 채택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낳았으며, 심지어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도 초래하였다.

■ 구조와 제도

EU는 완전한 지역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적인 제도를 구축하였다. EU의 입법부로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회원국을 대변하는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와 유럽회계 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가 EU의 사법부를 대표한다.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와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는 EU의 행정부를 대변한다. 각료이사회는 유럽경제 및 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와 유럽연합지역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Regions)와 협력해야 한다. 핵심적 경제 및 재정기구로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있다.

■노동자들을 위한 어젠다

소위 리스본 어젠다 혹은 리스본 전략³⁵⁾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EU의 고용 및 사회정책의 종합적 정책 골격을 제시한다. 회원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EU는 고용에 대한 우선 순위와 노동시장에서의 개혁전략을 골자로 하는 다년도 고용가이드라인에서 공동의 고용정책전략을 제시하였다. 고용가이드라인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지식기반경제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욕구와 유용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고용친화적인 노동비용과 임금기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추동하는 발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고용가이드라인은 좋은 노동(decent work)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유럽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최소규칙을 포함한다. 성, 종교, 인종, 연령, 장애 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엄격한 법적용, EU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연금과 의료보험과 같은 공동의 최소기준을 추구하는 사회안전망 체계 등이 그러한 최소규칙에 포함된다. 그러나 EU의 노동시장정책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와 훈련정책을 연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을 삭감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조직화된 노동으로서 노조가 시장경쟁력의 구축요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령화, 불평등,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고용 및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

35) 유럽이 경쟁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세계화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판단아래 EU 정상들은 2002년 리스본에서 EU경제를 지식기반경제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EU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다. 당시 '제3의 길'을 표방한 사민주의자들이 주도한 이 계획은 2004년 중간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2005년 브뤼셀에서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맞춘 신리스본전략을 채택하였다. EU국가의 정당은 보수주의자들로 대부분 교체되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와 고용정책을 결합시킨 사민주의자들의 전략의 핵심은 그대로 수용되었다.

해 사회적 일자리제공, 빈곤극복,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의 제공 등 EU 성장의 정당한 분배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어젠다가 기획되었다.

EU는 고용전략과 사회적 어젠다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안정적인 재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변화하는 시장조건에 노동자와 기업의 적응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참여의 접근을 향상시키며, 차별을 철폐하고, 직업 훈련을 개선하며, 저발전된 지역에 제도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가용할 수 있는 사회기금(Social Fund)으로 3천8십억 유로를 확보하였다. 한편,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구조조정 대상자,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5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는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EU는 자유화를 앞세운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기본적으로는 리스본전략처럼 사전에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추구해왔으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별화된다.

노동운동의 경우 이미 1973년에 설립된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이 유럽차원에서 노동자들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ETUC는 현재 유럽 36개국의 83개 노조와 12개 산별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ETUC는 유럽식 사회모델(European Social Model)을 촉진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완전한 인권 및 시민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단일한 유럽을 창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식 사회모델은 경제성장을 완전고용, 사회적 보호, 공평한 기회, 양질의 일자리,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과 근로조건의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ETUC는 기본적으로 혁신, 생산성, 경쟁과 성장을 강조하는 리스본전략의 핵심가치를 지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민감한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EU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럽차원에서 기업가들과 35개 산업섹터에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유지하고 있다.

EU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주로 유럽 의장국, 유럽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유럽의회 등과의 회합을 통해서 행사되며, 유럽경제 및 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를 포함한 다양한 자문기구에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 밖에 거시경제적 대화(Macro-Economic Dialogue: MED) 틀 속에서 ETUC는 유럽 경제 및 재무장관회의(the EU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COFIN), 유럽중앙은행, 유럽집행위원회 등과 정기적인 회합을 가진다.

유럽의 사회적 대화는 유럽산별연맹의 조정 아래 35개 산업섹터에서 진행된다. ETUC는 EU의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업가단체들과 유럽차원에서 전산업영역을 포괄하는 3개의 기본틀협약(Framework Agreement)을 맺었다: 육아유가(1996년), 파트타임 노동(1997년), 기간제계약(1999년). 이 3개의 기본틀협약은 유럽각료이사회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EU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밖에 노조와 기업가들은 자율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스템 속에서 유럽차원의 타협을 성사시켰는데, 원격근무자(Teleworkers)의 노동조건(2002년), 작업관련 스트레스(2004년), 일자리에서 성희롱과 폭력(2007년), 포섭적 노동시장(2010년) 등이 그것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사회적 대화 외에 ETUC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위와 집회를 조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ETUC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의 기업가단체가 ETUC와 책임지고 단체협상을 할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럽차원에서 산별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무역자유화가 초래한 고용불안성과 저임금노동의 증대라는 문제를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EU와 시민사회

EU는 1957년 로마조약이후 설립된 유럽경제 및 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를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허용해왔다. EESC는 기업, 노조, 농민, 소비자, 기타 이해집단 등 ‘조직화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일종의 자문조직이다. 이 조직은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와의 정책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방어한다. 이 조직은 EU 의사결정과정의 통합적 부분으로 간주되며, 경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EU의 주요기구는 EESC의 의견을 청청한다.

EESC는 각 EU회원국가의 인구비율에 상응하여 현재 334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ESC의 회원단체는 기업단체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NGO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연구자집단 등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다. 회원단체는 EU 회원국가에 의해 지명되며, 회원자격은 4년 동안 유지된다. 그러한 점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EU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EESC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 EESC는 연간 2회의 총회를 개최하며, 특수한 정책영역을 다루는 6개의 하위 분과위원회가 핵심 주제를 준비한다.

EESC외에도 EU에는 노조, NGO등의 기타 시민사회조직이 다양한 공식, 비공식경로를 통해 EU의 제도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다수의 기존의 환경 NGO단체, 소비자 집단, 농민조직 등은 유럽의회내의 다양한 정당, 특히 개별국가에서 작동하고 유럽차원에서 연대가 가능한 소규모 진보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간의 연계는 EU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EU 기구 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시민사회조직의 공개적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일부 NGO와 시민사회단체의 리더들은 유럽의회에 도전해서 당선하였으며, 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공식적인 제도의 채널을 통해 주변화된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였다.

2)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erica: ALBA)과 인민의 무역협정(The Trade Treaty of the Peoples: 스페인 약어로 TCP)

■발전과정

ALBA는 지리적 공간,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 공통의 잠재력을 공유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국가 간의 사회, 정치, 경제 통합모델에 기초한 국제협력기구이다. 이 기구는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지역주의 모델의 시대의 '대항문화'(counter-culture)로서, 그리고 카리브제도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영향에 반격하는 이데올로기적 행동으로서 간주된다. ALBA는 미국이 제안한 미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의 대안으로서 베네수엘라의 위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주고,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에 의해 지지하면서 창설되었다.

ALBA는 협력, 연대, 상보성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통합 기획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간주된다. 빈곤, 사회적 배제, 불평등한 교환,

국제관계에서 공정한 조건의 결여, 정보/기술/지식에의 자유로운 접근 등 실질적인 통합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ALBA는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빈곤을 제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모든 회원국에서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내재적 발전에 기초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한편, 인민의 무역협정(이하 스페인 약어로 TCP로 지칭)은 2006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주창되었다. 모랄레스는 기업의 강력한 로비에 이끌려 미국과의 FTA를 합의한 전임자의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안적 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추구하였다.

TCP는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무역협정에 대항하여 의도적으로 공세적인 무역협정을 추구하였다. TCP는 무역 어젠다의 최전선에 빈곤계층의 이해를 내세웠다. ALBA와 마찬가지로 TCP는 소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쟁과 자원의 추출과 착취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무역체제의 핵심적 가치를 거부하고, 연대와 상보성의 원칙에 기초한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틀 안에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ALBA와는 달리, TCP는 경제적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의 시대에 사회의 불평등과 다수의 경제적 주변화에 중점을 둔 대안적 통상 및 투자모델이다. ALBA와 마찬가지로 TCP는 FTA의 배후에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난하면서 통상을 통한 지역통합이 시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효과적인 감소, 토착 공동체의 보존, 환경보전을 목표로 한다.

TCP는 신자유주의적 어젠다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다음의 원칙을 제안한다:

- 국가는 통상협정보다는 국가발전에 대한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을 중요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호주의적' 수단을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 물과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인권은 다국적 기업의 권리 앞에 선행한다.

- 통상협정은 경쟁과 과도한 착취보다는 연대와 상보성을 추구한다.
- 통상협정은 소규모 공동체에 기초한 기업을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TCP는 2006년 5월에 ALBA와 협력관계를 맺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 무역협정(FTAA)에 대항하는 ALBA-TCP 체제를 출범시켰다. ALBA-TCP는 국가 간 협력관계에서 개별국가가 다른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할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모랄레스, 차베스, 카스트로는 ALBA-TCP 출범에 즈음한 공식 공동성명서를 기초하면서 3국가간의 특수한 협력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예컨대, 베네수엘라는 자신의 충분한 산유와 가스를 쿠비와 볼리비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발적 의사 및 의료노동자를 제공받는다. 볼리비아는 자국의 임업과 농업자원을 쿠비와 베네수엘라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양국의 인적, 자연자원을 받는다. 이 협정은 각 국가들이 자신의 특수한 역량과 자원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재화의 물물교환(barter exchange)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명하다. 그러한 물물교환은 실제로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던 협력형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나 지금도 이러한 유형의 무역은 자유시장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원칙에 모순된다는 이유로 서구에 의해 비판된다. 확실히 남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편화되기에 어려운 통상협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큰 국가에서 특정국가를 상대로 물물교환 형태의 통상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통상정책이 무조건적인 시장 논리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교육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상품을 보장하는 등 민중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PTA는 신자유주의적 지역 경제통합의 논리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대안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과 과제

- 노동조합에 던지는 함의

1) 대안적 지역주의를 위한 전제조건

역내 (국가)엘리트집단에 의해 추동된 정치적,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은 역내 회원국 민중들의 강한 유대감과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공동의 정체성은 역내 회원국 간에 합의된 정치적 목표나 공동의 어젠다보다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유대, (갈등과 반목을 포함한) 상호공유하고 있는 역사,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이러한 공동의 정체성은 역내 민중들이 지역 블록 내에서의 경제적 경쟁과 정치적 압력에 도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동시에 대안적 지역주의 내에서 민중의 소유권은 현실적으로 역내의 공동의 정체성이 국가이익 혹은 국가 정체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일국적 발전모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안적 지역주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대한 대안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대안적 지역주의에서 다음의 기본적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 공정, 평화, 정의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
- 의사결정에 민중의 참여와 역량강화(empowerment)
- 책임감과 투명성
- 기층민중의 기본적 욕구 실현
- 생산자원에 대한 민중의 통제와 권리

• 사회영역에서 인권(인간주권 및 사회경제주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공정, 평화, 정의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의 원칙

대안적 지역주의에서 국가간 밀실험상이 아닌 민중연대에 기초한 협력은 공정, 평화, 정의의 원칙에 기초해야만 한다. 그러한 협력은 경제적, 재정적 관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것이다. 회원국 상호간의 능력과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여 서비스와 자원의 교환형태로 협력을 추구하는 ALBA-TCP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아시아의 현실과 남미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다르므로 보다 현실적인 모델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ALBA-TCP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대안적 지역주의는 시장중심적 지역통합보다는 공정성과 사회정의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 의사결정에 민중의 참여와 역량강화

대안적 지역주의 모델은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통합의 목표를 넘어서 의사결정에 민중의 세력과 능력에 '기초한 민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과정, 구조, 메커니즘은 전 영역에 걸쳐 사회의 다른 영역(예컨대 노조)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에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민중은 역내 민중들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유권을 보장한다.

■ 책임성과 투명성

지역 거버넌스 내의 모든 제도와 기구는 지역주의의 근간과 핵심인 민중을 지향하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만 한다. 책임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은 지역

주의 내 제도와 국가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시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제도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거버넌스 기구(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적 접근을 확립함으로써 투명성기제를 확립해야 한다.

■ 기층민중의 기본적 욕구 실현

대안적 지역주의는 국가가 아닌, 민중의 실질적인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켜야 한다. 지역주의 내에서의 정치적 개입과 프로그램은 서비스와 재화의 이용과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실질적인 상황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식량주권, 건강 및 교육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민중의 기본적 욕구에 우선순위를 두며, 농업과 지방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ALBA-TCP의 기본적 이상은 대안적 지역주의가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 생산자원에 대한 민중의 통제와 권리

대안적 지역주의는 토지, 물, 임야와 같은 생산적 자원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 단지 다국적 물기업에 의해 사상 초유의 물부족 사태를 경험한 남미사례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통합은 지속가능한 삶(특히 농어촌과 지방)과 경제적 주권을 위한 핵심 토대인 생산적 자원에 대한 민중의 이해를 보호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대안적 지역주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긴밀하게 결합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서 지역통합 내에서 협력과 개입은 예방적 원칙에 근거하여 세대간 형평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중지향적 지역주의 모델은 지역 전반에 있는 기층의 실질적인 욕구를 다루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해야한다. 대안적 지역주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델은 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안적 지역주의’는 저임금 노동력과 소비시장만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의 규제 없는 진출을 추구하는 현재의 지역주의와는 차별화된 발전공식을 대변해야한다.

2) 민중지향적, 참여적 대안지역경제를 위한 노동운동의 선택

대안적 지역주의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점에서 대비되는 현재의 지배적인 모델에 대항하여 그러한 대안적 발전모델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여부이다. 대안적 지역주의 모델을 만드는 방식은 민중진영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취해야할 거대한 도전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은 기업/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민중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과 개입을 산출하기 위해 정부와 대립하게 되면, 민중진영과 시민사회는 대안적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여기서 지역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현재 지배적인 지역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며, 아시아에서 지역주의는 서구의 지역주의보다 더 정치주의적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대안적 지역주의의 발전모델은 노동운동에게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선택 1 보다 많은 민주적 참여와 개입을 통한 대안적 지역주의의 발전

역내 민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주도적

지역주의의 특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지역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조직과 공동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면서 지역주의 발전에서 기층민중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례로 아시아의 민중단체와 NGO조직의 비공식 네트워크인 아시아 민중연대회의(SAPA: 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vocacy)를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아시아의 발전 이슈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요 기구에 시민사회의 개입을 촉진하고 있다. 제기하는 핵심 주장 중의 하나로 SAPA는 ASEAN이 주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SEAN 인권기구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ASEAN 헌장(Charter)이 발효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SAPA는 ASEAN의 프로그램과 활동, ASEAN 헌장에 포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ASEAN에 개입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지역 거버넌스에서 지역기구나 정부들에게 민주적 참여공간을 받아들이고, 이를 제공하게끔 압력을 가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SAPA는 의식적으로 기존의 ASEAN모델에 근거하여 대안적 발전가능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공식, 비공식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아래 1997년에 체결된 암스테르담 조약에 기존의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 내에 사회정책이 추가된 사례와 유사하다. 대안적 지역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이러한 선택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인 투자를 의미한다. 집단적이고 응집력 있는 행동은 역내 민중들을 위해 시민사회가 개입하려는 노력의 강도와 진정성과 관련하여 EU 혹은 ASEAN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데 결정적이다. ASEAN 헌장 혹은 유럽사회헌장의 발효는 역내 기구로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개척할 기회를 의미하며, 그러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는 사회현장과 같이 변화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기회를 최적화하고, 확대하려고 시도한다.

EU의 EESC나 아세안의 SAPA의 사례에서 보듯,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중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조직을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적 지역주의의 발전으로부터 대안적 지역모델로 진화하려는 이러한 선택의 잠재력은 제도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기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능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압력에 대한 지역기구(regional institution)의 대응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

선택 2 민중주도적 대안적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현재의 지역주의에 대해 민중진영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은 국가라는 변수를 배제하고 지역주의에 대해 ‘순수하게’ 대안적인 접근을 찾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택은 시민사회나 공동체 중에서 파트너십을 찾는 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종종 진보적 정부나 진보적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수준에서 협력관계를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국가적 접근을 위해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은 선택 1에서와 같이, ‘국가’를 구성하고, 포함하는 것들을 재규정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민중-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대안적 지역주의를 실현하기 이전에 보다 구조적인 (국내)사회의 변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국가모델 모델이 지난 이십 년 동안 국가차원에서 주류로 인정받은 시민사회의 발전으로부터 보다 더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주류모델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시민사회가 주도한 발전모델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비국가적 행위자들 간의 지역협력(진보적정부의 협력사례를 포함)은 국가에 의한 보증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의 ‘레짐쇼핑’(regime shopping: 유리한 생산조건을 찾아 산업기지를 이전하는 전략)을 방어하기 위해 역내의 특정 산업부문 노동

조합들이 연대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본틀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예로 들 수 있다. 비국가행위자들의 이러한 수준의 대안전략은 민중 및 시민사회주도적 지역협력 모델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모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를 도모하는 다양한 공식제도(ASEAN, 동북아시아 3국의 FTA 등)는 국가 외부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발전모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중주도적 지역주의는 대안 모델로서 국가주도적 지역주의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다.

3) 대안적 지역주의의 발전을 위한 잠재적 요인

대안적 지역주의 모델의 확립을 위해 민중/시민사회진영은 대안적 지역주의 모델의 확립을 위해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선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물론 이 두 가지 선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지역주의의 발전의 추동력으로서 현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발전을 모니터링해야만 한다. 그러한 추동력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협력과 통합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익을 포함하려 한다.

현행 지역주의 모델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추동력 중의 하나는 ‘통상’(trade)이다. 만약 신자유주의적 통상 어젠다에 대한 반대를 넘어 모든 종류의 통상을 반대하는 반통상주의적 관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민중/시민사회진영은 통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중/시민사회진영은 통상의 이해관계가 소수의 특별한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이해에 복무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국가행위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

가서 민중/시민사회진영은 만약 그들이 생산자원과 적절한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만 있다면, 통상이 대기업/자산자본가들만이 아닌 기층민중의 삶과 같은 사회의 한계부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한계부문의 이익을 위한 통상과 좋은 삶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연계시킴으로써, 민중/시민사회는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서 국가가 지역차원에서 그러한 어젠다를 추진하는 것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현행 지역통합모델인 불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언제나 강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자유무역이데올로기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한 대안적 지역주의의 가능성은 민중·시민사회진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국가(행위자)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아세안 CECA 검토보고서”, 2007.2
- 권율**, “동아시아의 교역 및 투자구조 분석 및 평가”, KIEP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2005.11
- 김양희**, “일본 FTA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6-27호
-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중-ASEAN FTA 상품양허 주요 내용”, 2005.6
- 박번순**,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5.11
- 배금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결과 분석 :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12.27
- 배금찬**,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과 향후 전망 : ASEAN+3와 EAS와의 관계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12.29
- 배금찬**,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4.28
- 배금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전망 및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8.17
- 서준섭**, “한미FTA 통상독재와 통상관료의 독주” 시민과 사회 10호, 참여사회연구소
- 외교통상부**, “FTA 추진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3.9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아세안 FTA 주요 내용 -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상품무역협정”, 2007.4
- 원용목**, “CER 현황과 전망 : ASEAN과 관계를 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연구회 자료, http://www.kiep.go.kr/koipe/confirence_view.asp?num=177071
- 이장규 외**,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06-11, 2006.12
- 정성춘 외**, “일본·말레이시아 FTA 타결”,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5-19호
- 최호상**, “동아시아 채권시장 현황과 발전방안”, SERI 경제 포커스 제100호, 2006.7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14권 2호(2005.01)
- 임운택(2004)**, “FTA의 경제·사회적 대차 대조표”, 『World Labor』(한국국제노동재단), 10호, 4-7
- 박번순 외(2003)**, 『한국의 FTA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순찬 외(2004)**,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석준, 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출판사

임운택, 2003, [포스트포드주의로의 변형과 유연한 자본주의], {한국사회학} 37(6): 55~84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3.08.07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합의” 2007.08.0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8차 한-인도 CEPA 협상 개최”, 2007-10-30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개최”, 2007-09-08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인도 CEPA 제7차 협상 개최”, 2007-07-24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인도 CEPA 제6차 공식협상 결과”, 2007-04-06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주요성과’, 2006.5.4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ASEAN+3 재무장관회의 주요성과’, 2007.5.5

아세안 사무국, <http://www.aseansec.org>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

한국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Aggarwal, V. and Morison, C.(eds.). (1998). *Asia-Pacific Crossroads: Regime Creation and the Future of APEC*. New York: St. Martin.

Altwater, E, and Mahnkopf, B. (1999). *Grenzen der Globalisierung. Ökonomie, Ökologie und Politik in der Weltgesellschaft*.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4. edition.

Amsden, A. H. (2008).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myx, J. (2008).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A. Macintyre, T.J. Pempel, and J.Raverhill (eds.), *Crisis as Catalyst: Asia's Dynamic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17-139.

ASEAN Secretariat, AFTA Reader, 1998.12

Asian Development Bank. (2008). *Emerging Asian Regionalism: A Partnership for Shared Prosperity*.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Balassa, B. (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Homewood(Illinois): Richard Irwin.

Balassa, B. (1987). “Economic Integration”, In Eatwell, John; Milgate, Murray; Newman, Peter (eds.),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 2(E to J),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an, pp.43-47.

Baldwin, R. E. (1993).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4465, September.

Baldwin, R. E. (2006).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World Economy*, 29(11), pp. 1451-1518.

Bloomberg, “South Korea Pact Not Close, Flaherty Says”, 23 November. 2007.

Brand, U., A. Brummengraber, L. Schrader, C. Stock, and P. Wahl (2000). *Global Governance. Alternative zur neoliberalen Globalisierung?*,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Buzan, B. (1991).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Lynne Rienner. 2nd.

Chang Jae Lee, et al,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KIEP, 2006.12

Christensen, T. J. (1999).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3(2): 49-80.

- Dibb, P., David D. Hale, and Prince, P. (1998).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Asia's Economic Crisis," *Survival*, 40(2): 5-26.
- Economic Times (India)**, Asean FTA may be a no-show, 12 Sep, 2007
- Grimes, W. W. (2006). "East Asian Financial Regionalism in Support of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 Nesting",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6(3), pp. 353-380.
- Hew, D., S. Djwandono, S. Grenville, A. Sheng, M. Kawai, M. Mib, S. Montreevat and S. B. Das (2007). *Options for EAS Finance Cooperation: A Scoping Study*. Jakarta: ASEAN Secretariat, REPSF II Project 07/001, September.
- Hurrell, A. (1996).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Fawcett, L. and Hurrell, A.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67-68,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 a better world is possible", 2002
- Jayasuriya, K.(ed.) (2004). *Asian Regional Governance: Crisis and Change*, Routledge Curzon: London/New York.
- Jervis, R. (1976).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JETRO. (2008). *Japan's Outward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22 September.
- Kawai, M. and Wignaraja, G. (2007). *ASEAN + 3 or ASEAN + 6: Which Way Forward?*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Discussion Paper 77(<http://www.adbi.org/files/dp77asean.3asean.6pdf>)
- Kawai, M. and Wignaraja, G. (2008). *Regionalism as an Engine of Multilateralism: A Case for a Single East Asian FTA*.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No.14
- Keck, Margret E./ Sikkink, Kathryn (1999).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litics. i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Jg. H.150, pp. 89-101.
- Kim, S. and Lee, J.-W. (2008). *Real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7, June
- Lincoln, E. J. (2004).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New York &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Lindberg, L. N., J. C. Campbell, and R. Hollingsworth. (1991). "Economic Governance and the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 in the American Economy", in: *Governance of the American Economy*, edited by J. C. Campbell, L. N. Lindberg, and R. Hollingswor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htyre, A. (1991). *Business and Politics in Indonesia*, Sydney: Allen and Unwin
- Mackie, J.A.C. (1988). "Economic Growth in the ASEAN Region: The Political Underpinnings", in H. Hughes (ed.), *Achieving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77-100.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January 2002
- Ogata, Sadako (2003). Empowering People for Human Security, Payne Lecture Stanford University, 28. May. 2003. <http://www.humansecurity-dhcs.org/newsandevents/payne.html>.
- Ravenhill, J. (2010). "The 'new East Asian regionalism': A political domino effec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7(2), pp. 178-208.
- Ravenhill, J. and Jiang, Y. (2009). "China's Move to Preferential Trading: A New Direction in China's Diploma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8(58), pp. 27-46.

- Reuters, "Canada aims to match U.S.-Korea trade deal: minister", Oct 23, 2007
- Solis, M. (2003). "Japan's New Regionalism: The Politics of Free Trade Talks with Mexico",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3(3), pp. 377-404.
- UN (ed.) (2000).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 New York.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k, H. and A. Brunnengräber (1999a). *Transnationale Netze im Konfliktfeld Klima. Nicht-Regierungs-Organisationen als 'neue' Akteure der internationalen Politik*, Münster: Westfälischer Dampfboot.
- Wak, H. and A. Brunnengräber (1999b). "Kaffee, Kekse und Konventionen. NGOs auf der Klimakonferenz in Buenos Aires", *Blätter des iz3w* 234, 12~14.
- Wazer, M. (1990). *Kritik und Gemeinsinn*, Berlin: Rotbuch Verlag
- Wardenbach, K. (1997). "Das Weltgericht des Freihandels. Die WTO als Graue Eminenz der Globalisierung", *Blätter des iz3w* 224, 28-30.
- Woo-Cumings, M. (ed.) (1999). *The Development Stat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01).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Global Economic Perspective Trade, Regionalism, and Development*, 2005.